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2006. 9.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연구자 : 이 훈 동 (한국외대 법대 교수)
Lee, Hun-Dong

이 주 일 (세명대 법대 겸임교수)
Lee, Ju-Il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6. 9.

목 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I. 서 론	9
1. 문제의 제기	9
2. 연구목적과 범위	11
3. 연구방법	11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1. 들어가는 말	13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13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
1. 들어가는 말	25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25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5
1. 들어가는 말	65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65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7
1. 들어가는 말	117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117
VI. 결 론	127
참고문헌	129

▣ 부 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3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55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국문 요약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8년여가 지나서야 우리 형법이 탄생하였다. 형법을 제정당시에 관여했던 편찬위원들은 우리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반성하면서 한국 형법학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한동안 일본형법전이 적용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려는 해방당시의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국민의 윤리의식과 민주화 정신을 감안하면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형사법의 역사는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형사법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과연 선학자들의 그러한 의지와 바람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당시의 입법자들은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형법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 후 만들어진 수많은 형사법 분야의 법들은 그러한 처음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어려우면서, 일본법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은 대단히 어렵고 일상적이지 못한 용어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탓으로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우리 형사법이 만들어지고 50년 지난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령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민과 여전히 괴리되고 사실상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길이 없다. 전문가만이 법을 독점해서

는 안되고, 만약 그리되면 국민의 신뢰상실이 뒤따르게 된다. 형사법 분야는 특히 형벌의 엄격함 때문에 시민의 신뢰가 다른 어떤 법령과 비교하여도 그 중대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법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명·해설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처음 우리 형사법을 만들던 법제위원들의 생각을 후학자들은 물론 입법자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형사법 쉬운 형사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키워드 : 법령용어, 형사법, 입법학, 형사특별법

Abstract

Law must be a necessary tool of livelihood. The tool of livelihood must improve more than practical and easier in life. The purpose of law render services to pursuit of happiness for people and exist to contribute the dignity of man. Therefore,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have a important thing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legalism.

This report make a description of criminal special code for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All the while, criminal special code make a description of difficulty and incomprehensibility. Accordingly, people of all thinks that law is difficulty and incomprehensibility and disapprove understanding and approach.

This report make a description of criminal special code and a related code of this for understanding and approach of people. For this subject, we need to research and study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more than practical and easier people of all.

※ Key words : criminal special code, criminal code, terminology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형사특별법분야의 법령에 대하여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우리는 흔히들 형법 제정자들이 일체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여 오늘날 형사법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학자들은 우리 형법이 일체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해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형사법 분야에 법령을 살펴보면 우리 후학들이 얼마나 우리의 법령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는 반성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언젠가 일본에서 자신들의 법문에 대한 어원을 찾아가는 연구 보고서를 보고 이러한 노력을 우리들은 얼마나 하고 있나 새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많은 형사법 분야의 법들은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권위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한자어를 남발하여 사용하는 등의 잘못을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법령을 개선하고 순화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법령은 대단히 어렵고 일상적이지 못한 용어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탓으로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우리 형사법이 만들어지고 50년 지난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령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민과 여전히 괴리되고 사실상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1. 서론

지을 길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유들은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현행 법제가 고유한 전통적인 법문화를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법을 수용하여 오늘에 이른 것도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이미 해방 후 50년이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설득력은 크지 않다. 법률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입법기술상의 문제,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수성,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점은 실정법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입법자와 법률전문가들이 그저 외국의 입법을 가져와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우리식의 법률용어나 법령문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은 반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본형법전의 몇 배가 넘는 형사특별법분야에 대한 법률문의 한글화와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해 연구하면서, 실제 형사사법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기본형법전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너무도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더욱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한 이유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한글화와 우리말화하고 순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5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과 용어들은 이미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것이라는 반대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전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닌 일반 시민의 도구이며 이 도구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진행하여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현재하고 있는 법령을 좀 더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고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일반인이 법령에 대한 쉬운 이해를 통해 규범을 통한 시민의 가치관을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법치국가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목적과 범위

일차에 이어 이차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리 한 연구에 적지 않게 소홀함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법령들 역시 과거의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면서, 표현 또한 지나치게 문어체 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 문장은 당장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타당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문장의 한글화와 순화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쉬운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여 법이 실질적 시민생활에서 잘 실천되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 적인 연구의 방법이다.

이 글 역시 현행 형사특별법의 본래 의미를 지키면서 법률문장과 용어를 한글화, 순화하여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법률을 읽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하는 점은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특별법에 대한 한글화와 법령용어의 순화 및 문장의 순화이지만 형사특별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양이 많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다. 금번 연구의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한정하였다.

3.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방법은 형사특별법의 적용대상자와 법을 배우는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이해도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생각을 일일이 찾

1. 서론

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구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위의 여건상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본다. 겨우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법학도와 교양으로 법학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문의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뿐이다. 따라서 본 글은 기존에 나와 있는 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관련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내지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로 고치고 ‘예입’과 ‘신탁’을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예탁’이라고 고치고, ‘습벽’같은 한자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화 하여 ‘버릇’으로 ‘송치하다’는 한자어는 ‘넘겨주다’라고 순화하여 문장구조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제 몇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제 몇조에서 규정된...’ 혹은 ‘제 몇조의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여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일상적인 표현으로 쉽게 고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제나 태 ‘...한 때’등은 ‘할 때’ 혹은 ‘될 때’라고 하여 문장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고쳤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 조사에서 일본식 표현이 관형격조사의 남발을 없애는 문장구조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들어가는 말

보건범죄는 서민의 생활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범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더욱 이해하기 쉬운 법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법을 집행하는 자는 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행하게 되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절실한 법분야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한 좀 더 쉽고 이해가 편리한 문장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식품을 만들거나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영세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법률전문가 집단에서 지켜가야 할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운 문장구조와 용어를 통하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 이법에 대하여 좀 더 일상적인 문장구조와 용어를 사용하여 고쳐보고자 한다.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不正食品 및 添加物, 不正醫藥品 및 化粧品, 不正有毒物의 製造나 無免許 醫療行爲등의 범죄에 대하여 加重處罰등을 행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0.12.31>

1) 우리 법문장이 대부분 번역투로 되어 있어서 일본어의 “の”를 번역한 문장투가 너무 남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장구조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본 법률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어체인 점도 법을 일반인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기여’는 ‘도와준다’는 우리말이 있고, ‘이바지’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기여’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도움을 주어서 이바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굳이 한자어인 ‘기여’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바지’란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을 제조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고치면 법문이 지녀야하는 간결함이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을 사용하고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第2條 (不正食品製造등의 處罰)

①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加工한 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類似하게 偽造 또는 變造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規定에 違反하여 製造加工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개정 1980.12.31, 1986.5.10, 1990.12.31, 2002.8.26>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人體에 顯著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5千萬 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第1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加工·偽造·變造·取得·販賣 또는 販賣 알선한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 이상 5倍 이하에 相當하는 罰金を 併科한다.<개정 1990.12.31>

1) ‘판매’역시 쉬운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말인 ‘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본다.

1) 표제에서도 ‘부정식품등의 처벌’이라고 하여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하여도 이것 역시 일본식 법문을 번역한 형태를 띠고 있는 문장구조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소한 것도 역시 우리어법에 맞게 조사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부정식품등을 처벌’ 혹은 ‘부정식품등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제조, 가공한 자²⁾’는 ‘제조’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그러나 쉽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한자어로 사용할 경우에 법문이 너무 길어지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이 역시 법령의 권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이유라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製造’라는 한자어는 ‘만들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만들거나 가공한...’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에서 ‘유사한’은 국어사전에서도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없는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권위적인 법령을 한자어를 남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그리고 비록 쉬운 한자어라고 하여도 굳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처음에는 낯설은 용어일지라도 우리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슷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4) ‘그 情을 알고’는 일반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역시 일본식 법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우리 법령의 고질적인

2) 법령에 자주 등장하는 ‘...한 者’는 일본의 ‘모노(もの)’라고 혼동하는 것을 우리는 음독한 것으로서, 형사법의 여러 규정에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인식보다는 ‘者’의 훈이 ‘놈’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46면).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병폐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해하기 쉽다고 하여도, 이러한 일본식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사정을 알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5) ‘알선한 자’에서 ‘알선’은 법령에서 보통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한자어 표기가 대단히 어려워 한글로 표기하였으나, ‘알선’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원에서도 ‘알선’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³⁾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알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선’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6)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일본식표현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7) ‘현저히 유해한’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같은 법 8조에 의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4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저히 유해한’이란 한자어식 표현을 법령을 권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면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단히 해로운’ 또는 ‘매우 해로운’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욱이 개념의 불명확성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두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3)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4)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8)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은 전체적으로 어법이 어색하고 불필요한 문어체이어서 법령의 간결성에도 반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라 본다.

第3條 (不正醫藥品 製造등의 處罰)

①藥事法 第26條第1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⁵⁾ 醫藥品 또는 化粧品을 製造한 者, 그 情을 알고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 同法 第56條第2號에 違反하여 主된 成分의 效能을 전혀 다른 成分의 效能으로 代替하거나 許可된 含量보다 顯著히 不足하게 製造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 이 미 許可된 醫藥品 또는 化粧品과 유사하게 偽造 또는 變造한 者, 그 情을 알고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개정 1980.12.31, 1990.12.31>

1. 醫藥品 또는 化粧品이 人體에 現저히 有害한 때 또는 藥事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檢定醫藥品중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醫藥品으로서 效能 또는 含量이 顯著히 不足한 때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醫藥品 또는 化粧品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第1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偽造·變造·取得·購入·販賣 또는 販賣 알선한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 이상 5倍 이하에 相當하는 罰金을 併科한다.<개정 1990.12.31>

第3條의2 (再犯者의 特殊加重)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 내에 다시 第2條第1項第1號 또는 第3條第1項第1號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1) ‘부정의약품 제조등의...’는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정의약품 제조등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 ‘아니하고’는 준말인 ‘않고’라고 하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하면서 일반인에게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제조한 자’는 ‘제조’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그러나 쉽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한자어로 사용할 경우에 법문이 너무 길어지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이 역시 법령의 권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이유라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製造’라는 한자어는 ‘만들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화장품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유사하게’는 ‘비슷하게’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4)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일본식표현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5)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은 ‘사람 몸에 대단히 해로운’ 혹은 ‘사람에게 매우 해로운’이라고 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해하기 더 쉽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체’라는 한자어도 사용이 불필요한 한자어라고 본다.

6) ‘顯著히 不足한 때는’에서 ‘현저히’는 ‘대단히’ 혹은 ‘매우’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부족한 때에는 시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우 부족할 때는’ 혹은 ‘대단히 부족할 때’ ‘부족’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고쳐서 ‘대단히 모자랄 때’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이고 우리말로 된 법

령을 만드는 취지에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醫藥品으로서’에서 ‘大統領령에서 정해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고, ‘의약품으로서’에서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의약품으로서’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쉽고, 어법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8) ‘醫藥品 또는 化粧品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는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단어를 중복하지 않아 우리 어법에도 맞고, 법령 또한 간결하게 되어 이해하기도 쉽다고 본다.

9)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은 전체적으로 어법이 어색하고 불필요한 문어체이어서 법령의 간결성에도 반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라 본다.

10) ‘집행을 종료’는 ‘형의 집행을 마친다’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고 법령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 본다.

第 4 條 (不正有毒物 製造등의 處罰<개정 1990.12.31>)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1>

[개정규정시행일 1991.2.1]

1.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殘留毒性이 人體에 현저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00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사용·偽造 또는 變造한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 이상 5倍 이하에 相當하는 罰金を 併科한다. <개정 1990.12.31>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不正有毒物 製造등의 處罰’에서 ‘부정유독물제조등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이라고 본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관형격조사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는 어법이 어색하여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0조에서 규정된 등록을 받지 않고 유독물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3)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4조 규정에 따르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4)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일본식 표현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5)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은 ‘사람 몸에 대단히 해로운’ 혹은 ‘사람에게 매우 해로운’이라고 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해하기 더 쉽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체’라는 한자어도 사용이 불필요한 한자어라고 본다.

6)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은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물질의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도 피하고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第 5 條 (不正醫療業者의 處罰)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醫師가 아닌 者가 醫療行爲를, 齒科醫師가 아닌 者가 齒科醫療行爲를, 韓醫師가 아닌 者가 韓方醫療行爲를 業으로 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이 경우에는 100萬원 이상 1千萬원 이하의 罰金을 併科한다.<개정 1986.5.10, 1990.12.31>

1) ‘不正醫療業者의 處罰’은 관형격조사를 없애고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정의료업자를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본다.

第 6 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條 내지 第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例에 따라 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第2條 내지 第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은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2조 부터 제 5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어식 표현을 고칠 수 있으면 가능한 고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문장을 전체적으로도 바꾸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어법에도 맞다고 본다. 즉 ‘제2조부터 5조를 위반한 때’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2조부터 5조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문장이라고 본다.

3)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는 ‘법인 또는 개인도...’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일상적이라고 본다.

第 7 條 (許可의 取消)
 ①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處罰을 받았거나, 그 製品이 規格基準에 違反하여 人體에 有害하거나, 效能 또는 含量이 顯著히 不足하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에서 檢定된 營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免許 또는 登錄을 管轄하는 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의 要求에 따라 그 許可·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8.2.28>[개정규정시행일 1991.2.1]
 ②第1項의 경우 이 法에 의하여 營業의 取消를 받은 者는 取消된 날로부터 (處罰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間 당해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許可의 取消’은 ‘허가를 취소’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 본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규정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령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營業에 대하여는...’은 ‘검증된 영업은...’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면서도, 번역문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법령의 문장구조가 된다고 본다.

4) ‘당해’는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령에서 번역투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에서 ‘당해’라는 표현이 자주 목격되지만, 이러한 표현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는 일상적으로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본다.

5) ‘第1項의 경우 이 法에 의하여...’은 ‘제1항의 경우 이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第 8 條 (有害등의 基準) 第2條 내지 第4條 및 第7條중 “현저한 有害” 및 “현저한 不足”의 基準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1) ‘유해등의 기준’은 ‘유해등 기준’이라고 하여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내지’는 한자어식 법령용어로 법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은 이를 거의 알지 못하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2조 부터 제4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고 본다.

3) ‘현저한...’은 ‘매우’ 또는 ‘대단히’ 라고 고치는 것이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한자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명확성이나 해석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第9條 (賞金等)

① 이 법에 規定하는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監督廳에 通報한 者 또는 檢舉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賞金을 支給한다.

② 他人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虛偽로 情報를 제공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이 법에 規定하는 犯罪를...’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발각’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식의 한자어는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이다. ‘발각’이라는 표현도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발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3) ‘통보한 자’는 ‘알린다’는 표현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4) ‘...한 자에 대하여는...’은 일본식 번역투의 문장이다. 그러므로 ‘...한 자에게는’ 혹은 ‘...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령이 정한대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6) ‘他人으로 하여금...’은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이라고 하여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이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여

II.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가는 방향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第10條 (適用의 범위)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 酒稅法 第5條, 農藥管理法 第7條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그 製造, 加工 또는 販賣에 관하여 許可, 免許 또는 登錄을 받아야 할 畜産物, 酒類 또는 有毒性 農藥은 각각 食品衛生法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例에 따라 이 法을 適用한다. <개정 1980.12.31, 1984.12.31, 1990.8.1, 1990.12.31, 1997.12.13, 2004.12.31>

- 1) ‘適用의 범위’는 ‘적용범위’라고 하여 관형격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올바른 표현이 된다고 본다.
- 2) ‘제조’는 ‘만들다’는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 3)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라고 본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는 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으로 그 의미나 사용되는 표현이 더욱 쉽고 일상적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의 문장구조와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큰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필요한 한자어나 어려운 문장구조를 가지고 권위적인 법령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법은 특히 일반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반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고치는 것이 이 법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법령은 수업을 받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일일이 문의하면서 쉬운 문장이 될 수 있게 고쳐보고자 하였다.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 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靑少年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靑少年을 보호·救濟하여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1) ‘알선하는 행위’는 ‘알선’은 법령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주선’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 판결문을 살펴봐도 ‘주선’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제작’이나 ‘배포’는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은 쉽게 읽거나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작’은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음란물을 만들거나...’라고 고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青少年을 보호·救濟하여...’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겠지만,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어서 어색하다. 그러므로 문장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주어이므로 ‘청소년을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보호 구제하여...’라고 하면 문장도 간결해지고 불필요한 중복을 막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2005.12.29>

1. “青少年”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青少年, 青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青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은 문어체적인 범문의 표현으로 이 역시 일상적인 표현방식이 아니어서 어색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청소년...’이라고 하

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본다.

2) ‘...행위라 함은’은 불필요하고 권위적인 문어체 문장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3) ‘알선’은 ‘주선’으로 바꾸는 것이 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4) ‘청소년으로 하여금’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법령이 권위적인 모습을 지니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청소년에게...’라고 하면 간결하고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5) ‘행위로서...’에서 ‘로서’는 자격이나 주격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여기서는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행위으로써’라고 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라고 본다.

6) ‘수치심’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서 일보하여 가능하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그 밖의 성적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는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를 가진 접미사인 ‘성적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8) ‘기타’는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이 현재 법령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9) ‘그 밖의’에서 ‘의’는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第3條 (解釋·적용상의 주의) 이 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權利가 不當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⁶⁾ 주의하여야 한다.

6) ‘아니하도록’은 준말인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解釋·적용상의 주의’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여 표제어를 사용하는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장구조의 개선과 관련되어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표제어에서는 오히려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여 ‘해석적용상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이 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은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으로, 이러한 문장구조가 법령을 권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령을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제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제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호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만들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문장이 된다고 본다.

2)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는 전체적으로 문어체 문장과 번역투의 문장으로 어색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인 ‘국제적 범죄라고 인식하고 범죄정보를 공유...’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제 4 조의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에서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이라고 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간결하면서 일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 4 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를 버리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표제는 그 법령의 기본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이 법문은 전체적으로 번역투의 문장이 되어 어색하고 일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번역투의 문장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대로 두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5條 (청소년의 성을 사는 行爲) 青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서도 역시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고친다면 ‘청소년에게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이라고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第6條 (청소년에 대한 強要行爲等)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2. 僞計 또는 先拂金 기타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青少年을 곤경에 빠뜨려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4. 營業으로 青少年을 青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 青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1호에서도 문장을 전체적으로 번역투가 아닌 그리고 문어체의 문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그리고 어순을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1항 1호의 의미는 표제어와 연결하여 이해하여 보면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청소년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1호는 문장구조가 애매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주어인 ‘청소년’을 문장의 앞으로 가져와 ‘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이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되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2) 2호에서 ‘위계’는 사전적 의미가 ‘거짓 꾸민 계획이나 계략’을 말하고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⁷⁾ 형법분야에서 ‘위계’라는 표현은 법령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속임수’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2호의 경우에도 주어인 청소년을 문장의 앞으로 가져와 어순을 바꾸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속임수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이 성을 파는 상대방이 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4) 3호 역시 전체적으로 어순을 바로잡고, 문장구조를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어인 청소년을 문장의 첫번째로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소년을 업무·고용 기타관계 때문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고 본다. 법령이 이러한 문어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 역시 법령이 번역투의 문장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38면 참조.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4호 역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올바른 어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6) ‘乃至’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그 의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거나 사물의 이름 사이에 쓰이어 ‘또는’·‘혹은’의 뜻”으로 그 의미를 파악될 수도 있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법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그 의미를 물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부터’라고 고치는 것이 일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7) 4항의 경우에도 일상적이지 못한 표현과 맞지 않는 어법 그리고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4항에서는 누군가가 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을 사는 상대방’이란 청소년이 누군가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3자가 권유한 경우에도, 즉 자신이 직접 청소년의 성을 사지 않아도 처벌된다는 의미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의미를 4항의 조문을 읽어서는 결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가지고 있다. 번역투의 문장구조와 권위적인 문어체 문장을 그대로 둔 채 한글화는 법령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는 데는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차적으로 한글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법의 해석이나 간결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4항은 ‘청소년에게 성을

과는 상대방이 되게 권유.....’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第 7 條 (斡旋營業行爲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개정 2005.12.29>

1.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의 場所를 提供하는 行爲를 業으로 하는 者
2.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하는 行爲를 業으로 하는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事實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을 提供한 者
4. 營業으로 性을 사고 과는 行爲의 場所를 提供하는 業所 또는 알선하는 業所에 青少年을 雇用한 者

②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營業으로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強要한 者
2.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의 場所를 提供한 者
3.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한 者
4. 營業으로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의 場所를 提供하거나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하기로 約束한 者

③ 青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強要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표제어에서 ‘알선’에서 ‘알선’은 법령에서 보통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한자어 표기가 대단히 어려워 한글로 표기하였으나, ‘알선’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원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⁸⁾’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알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선’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라 생각된다.

2) 제1항 1호에서 청소년의 성 매수에 장소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를 가진 조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중복하여 어법에도 맞지 않고,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행위책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행위를 중복적으로

8)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본다.

3) 제1항 제2호 역시 문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이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4)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성매수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업소를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4호를 읽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업으로 성을 파는 장소...’ 즉 ‘영업장소 업소’라고 하므로 불필요한 동의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잘못된 문장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문장구조는 영업적으로 성을 사고 사는 행위만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소에게 업소를 다시 빌려준다는 의미인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문장구조가 할 수 있다.

5) 전항 후단의 경우에도 ‘주선하는 장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알선’은 ‘주선’으로 고치는 것이 좀 더 일상적이라고 본다.

第 8 條 (青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配布등)

- ①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 營利를 目的으로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貸與・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所持・運搬하거나, 공연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
 ④ 青少年을 青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⑤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1) 제8조의 표제어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반포등’이라고 고치는 것이 관형격조사를 남발하여 사용하는 법령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일이 될 것이다.

2) ‘소지’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한자어로 사용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거나’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⁹⁾ 이처럼 개념상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표현이고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표현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따라서 ‘다수가 알 수 있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4) 4항의 경우에도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선한 자...’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형격조사를 줄이고,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문장구조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第 9 條 (青少年 賣買行爲)
 ① 青少年의 性を 사는 행위 및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青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9) 대법원 1989.7.11. 선고 89도886 판결.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 青少年의 性を 사는 행위 및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青少年을 國外에 賣買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青少年을 國內에 賣買 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1) 1항에서 ‘제작’은 ‘만드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굳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자어를 고집한다는 것은 법령을 권위적인 산물로 보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에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1항과 2항에서 ‘매매’는 앞선 법조문에서 사고판다는 의미로 우리말로 사용했음에도 ‘매매’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사고 판 자...’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2항에서 ‘국외’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혹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사고파는 것을 모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第10條 (青少年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 등)

① 女子 青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개정 2005.12.29>

② 青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③ 青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④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青少年을 姦淫하거나 青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1) 제1항의 경우에 어순을 바꾸는 것이 일상적이 문장구조가 되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의 죄를 여자 청소년에게 범한 자는 5년이상...’이라고 고치든지 아니면 ‘여자청소년’이 주어이므로 어법에 맞게 고치려면 ‘...에 대하여’라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번역투의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자 청소년에게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2항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어인 ‘청소년’을 뒤에 둔다고 하여도 ‘형법 제298조의 죄를 청소년에게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문장구조도 맞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된다.

3) 3항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299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거나 ‘...제299조의 죄를 청소년에게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법에 맞고, 문장구조 또한 맞아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4)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은 ‘청소년을 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를 벗어난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 되고 또한 법령을 간결하게 만들어 이해하기도 쉽다고 본다. 물론 기존의 것을 그대로 두어도 이해하기 전혀 어렵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어법에는 맞지 않는 번역체 문장구조이어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내지’는 일반인이나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문의하여 보면 ‘혹은’ 또는 ‘과’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는 일반인은 이해가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내지’는 일상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한자어를 한글화하는 것만으로는 법학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학입문 수업시간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혹은’ 또는 ‘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를 지닌 한자어를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1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러한 한자어를 한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고소기간을 기산한다’에서 ‘기산’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산’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보통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한글화한 경우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여 ‘고소기간의 계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第1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罰金刑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내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6조부터 9조까지의 죄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2) ‘당해’는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는 오히려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3)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는 불필요한 문어체와 번역투를 버리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인 문장구조라고 생각된다.

第12條 (內國人的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형법』 第3條(內國人的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 犯罪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1) ‘내지’는 ‘부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이라고 한 경우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가진 것으로 일반인은 이러한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그리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제3조에서 규정된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하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1) 1항의 경우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5조에서 규정된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게는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라고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구조라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 2)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의하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라고 직접화법을 사용하여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라는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한 문장구조로, 이해하기 어렵고 자연히 문어체의 법령으로 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색한 문장이 되고, 이러한 결과 권위적인 법령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¹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항에서 ‘보호처분에 처함’이라고 하는 문어체 문장을 개선하여 ‘보호처분에 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어법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문어체 문장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곧 권위적인 법령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2) 1항에서 ‘인정할 때에는...’은 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 된다. 그러므로 ‘인정될 때는’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0) ‘송치’는 그 의미가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 역시 일상적인 아니고, 일반인들을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사용도 우리말로 고치거나 다른 쉬운 용어를 찾는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송치’는 말 그대로 피의자나 서류를 검찰청에 넘기는 것을 말하므로... 전체적으로 ‘관할법원 소년부에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장구조를 바꾸어 우리말로 된 법령을 만드는 취지에 적절하다고 본다.

3) 1항의 ‘당해’는 ‘해당’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해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2항에서 ‘송치 받은 사건...’은 ‘넘겨받은 사건’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5) 2항의 전체적인 문장구조 역시 일상적이고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번역투의 문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년부로 넘기기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소년에게...’라고 하면 보다 쉽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구조를 가져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 본다.

6) 3항의 경우에도 문장구조를 조사등을 개선하여 번역투의 문장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2항에서 규정된... 상담과정을 위해서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제15조 (보호처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감 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1) 1항은 ‘사건을 송치받은...’ 은 ‘사건을 넘겨받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1항의 ‘당해’는 ‘해당’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해’는 법령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이라고 이것을 일상적인 표현인 ‘해당’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1항에서 ‘당해청소년에 대하여...’라는 문어체 문장을 ‘해당 청소년에게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4) 제1항 제1호에서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은 ‘소년법... 각호에서 규정한 혹은 각호에서 규정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장구조이고, 번역투의 법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5) 제2호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에서 문어체이면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성매매...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3항에서 규정된 청소년 보호센터... 선도보호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의 문장구조에도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6) 제2호에서 ‘선도보호를 위탁’에서 ‘위탁’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한자어라고 보기 어렵다.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도 ‘위탁’이라는 한자어는 반드시 필요한 한자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맞은 용어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본 조의 경우에는 ‘...선도보호를 맡길 수 있다’ 혹은 ‘부탁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권위적인 인상을 가진 법령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려는 뜻과도 맞는 것이라 본다.

7) 본조 제2항에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된 보호관찰처분...'이라고 하여 번역투의 법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관형격 조사의 법령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8) 제3항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는 '제1항 제2호서 규정한 맡겨진 기간은 6월로 하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여기서 '기간은 6월로 하되'에서 법에서는 6월과 6개월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혀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통일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9) '범위 내에서'는 불필요한 한자어의 사용이라고 본다. 한자어를 한글화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문장구조의 개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제15조의2 (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가해 청소년의 처리’라는 표제어는 ‘가해청소년을 처리’ 혹은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고 ‘가해청소년처리’라고 표제어를 삼는 것이 번역투 투성이인 법령의 문장구조의 개선의 첫발이라 할 것이다.

2) 1항의 ‘당해사건’은 ‘해당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3) ‘송치’는 ‘넘긴다’로 바꾸고 ‘관할법원 소년부에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한 법령의 문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송치는 법문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로 법률용어와 일상적인 용어가 반드시 달리 사용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능하면 그리고 한글화나 우리말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송치’는 특별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긴다’로 하여도 무방해 보인다.

4) 2항에서 ‘당해’ 또한 ‘해당’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은 ‘제1항에서 규정한 가해청소년을 발견한 경우’라고 하거나 혹은 시제를 바꾸어 ‘제1항에서 규정한 가해청소년을 발견할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어서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제16조 (保護施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第17條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2. 對象 靑少年의 保護·자립지원
3. 對象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情緒的 安穩 회복을 위한 治療, 集團相談 프로그램운영
4.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를 위한 敎育프로그램 운영
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의 他機關에의 委託

1) ‘...의 규정에 의한...’은 어색한 문장구조를 야기하고 있어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서 규정된 청소년... 시설 또는 청소년...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된 청소년보호센터 및...’

2) 제16조의 후단에 ‘업무를 수행’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을 한자어를 사용하여 권위적인 법령의 문장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관행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어색한 문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3) ‘대상청소년의...’에서 ‘의’는 관형격조사로 일본식 문장구조를 이루는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표현과는 달라 문장이 어색하고, 이는 법령의 권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청소년에게 보호,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4) 5호에서 ‘위탁’은 ‘맡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타기관’은 ‘다른 기관’이라고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법문에서 가능하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화 또는 우리말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는 곧 법의 권위적인 것을 벗어나고 일반인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 본다.

第17條 (相談施設)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5.12.29>

1.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 申告 접수 및 相談
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連繫
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關連한 調査·研究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5.12.29>

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業務
3.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青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業務
4. 性暴力 被害者인 青少年의 身體的·精神的 安정회복과 社會복귀를 돕는 業務
5.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
6. 青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青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性暴力 被害者인 青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

1) 제1항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은 ‘10조에서 규정한, 10조에 규정된’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번역투의 법문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1항 후단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역시 ‘제7조에서 규정한, 혹은 제7조에 규정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제1항 1호에서 ‘내지’는 일반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진 한자어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법령의 권위적인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 ‘對象 青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연계’에서 ‘연계’는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쉬운 말로 고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상담소의 업무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을 것으로 대상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상청소년과..... 관련시설을 연결’이라고 하면 더욱 쉽고 이해하기도 편할 것으로 본다.

5) 3호에 ‘기타’는 ‘기타’에서 ‘기타’라는 한자어식 표현은 법령에서 해석을 두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한자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봐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인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¹¹⁾. 라고 하는 판례에서 보듯이 기타라는 표현은 법령용어로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예를 나열하는 것

11)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불가피하다면 ‘기타의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일상적이면서 이해하기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하는데 법문에서 이미 ‘사고판다’는 우리말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라는 한자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한자어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7) 2항에서 ‘第24條의 規定에 의한’이라는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버리고 ‘제24조에 규정한’ 혹은 ‘제24조에 규정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고 어색하지도 않다.

8)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業務’는 ‘상담에 응한다’는 것은 상담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어색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해 주는 업무’ 혹은 ‘상담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9) 본조 제2항 3호는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業務’라고 하고 있는데 첫째 ‘성폭력피해로 인하여...’라는 표현에서 ‘인하여’는 한자어를 사용한 법문으로 일상적인 표현인 ‘성폭력피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 본다. 그리고 ‘기타사정으로’에서 ‘기타’는 최근의 법령에서 발견되는 표현인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10) 제2호에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 안정회복...을 돕는 업무’는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을 돕는 업무이므로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신체적... 안정회복을 돕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이어서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11) 5호의 경우 어순을 바꾸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고 여기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단체등을 앞에 오게 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자보상... 사법처리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12) 제6호에서 ‘青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라고 하여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법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

13) 7호 역시 일본식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색하다.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라고 하지 않아도 ‘성폭력범죄 및 피해를 조사 연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14) 8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관형격조사가 남발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밖에 ‘성폭...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

第18條 (秘密漏泄禁止)

①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查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係하는 公務員은 對象 青少年 및 被害 青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特定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寫眞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青少年 性賣買 및 青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青少年 및 被害 青少年의 生活上에 關係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III.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 대하여는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⑥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와 발행인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1항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2) 1항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查...’에서 관형격조사를 남발한 일본식 번역투의 범문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적인 표현인 ‘제5조부터 10조까지 규정된 죄를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워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를 가지게 된다.

3)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은 시제를 바꾸는 것이 더 올바른 문장이라고 본다.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문장이라고 본다. 법령에서는 특히 시제등은 거의 신경쓰지 않고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²⁾

4) 1항에서 ‘용모’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우리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그 의미를 받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능하면 고치는 것이 좋아, 우리는 오히려 ‘외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생김새’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법령을 개선 순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 이러한 법조문의 문장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는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183면 참조.

5)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은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이라고 하는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6) 2항에서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자...’라고 하여 문장구조를 순화한 조문을 발견할 수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7) 2항의 후단에서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소추하는데 필요한...’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어법에 맞고,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8) 3항에서 ‘규정에 의한...’은 ‘규정된’ 혹은 ‘규정한 시설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9) 3항에서 ‘누설’은 액체 같은 것이 스며드는 것을 말하고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법률용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쉬운 한자어는 아니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알려지게 한’ 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0) 4항에서 ‘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 대하여는’은 ‘제 5조부터 10조까지 규정된 범죄는’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도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어색한 문장구조인 번역투도 아니어서 적절하다고 본다.

11) ‘성명’이나 ‘연령’은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거나 간결성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령이 권위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가능하면 한글화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명’은 ‘이름’, ‘연령’은 ‘나이’, ‘용모’는 ‘생김새’ 등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구조와 법령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12) ‘기타’는 ‘그 밖에...’라고 고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법문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5항의 ‘내지’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5항에서 ‘신문의 편집인...’은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고 ‘신문 편집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第19條 (搜查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查를 담당하는 搜查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靑少年의 人權 및 特性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各別히 주의하여야 한다.

1) 19조에서 표제어가 ‘수사절차에서의 배려’는 수사절차에서 배려라고 하면 될 것을 관형격조사를 남발하는 법령의 관행에 사로잡혀서 조사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어색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다. 그러므로 ‘수사절차에서 배려’라고 표제어를 사용하면 더 순화된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2) ‘내지’는 ‘부터’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일반인도 오해를 하지 않는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3)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은 번역투의 문장을 그대로 두고 일본식 문장구조 그대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것이 아무리 관행적이라 하여도 일반인은 이러한 문장을 읽으면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가 될 것이다.

4)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함에 있어서’라는 문어체 문장은 법령을 권위적으로 만드는 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라고 하면 될 것이다.

5)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에서도 ‘...함과 동시에’ 라는 문어체 문장구조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동시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해하지 아니하도록’은 ‘해치지 않도록’이라고 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쉬운 문장구조가 된다고 본다.

第20條 (犯罪防止 啓導)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 2回 이상 작성하여 官報掲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 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5.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6.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7. 靑少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 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 公開對象者 및 對象 靑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 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靑少年에 대한 관계, 犯行후의 情況 등을 고려하여 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 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靑少年과 被害 靑少年의 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

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1항에서 ‘범죄방지등을 위한’은 ‘범죄방지를 위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일상적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2항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은 ‘1항에서 규정된’ 혹은 ‘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일본식 문장투를 사용하는 법령의 관행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성명’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말을 사용하여 한자어를 사용을 남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령’도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령을 간결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냥 ‘나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4) ‘계도’는 한자로 사용될 경우 그 음을 읽기 매우 어렵고, 일상적으로 잘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계도’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깨치어 이끌어준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더욱이 이 법의 당사자들에게 ‘계도’는 너무 어려운 한자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일깨움’ 혹은 ‘깨우침’등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5) 제2항 2호에서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에서 ‘내지’는 ‘부터’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6) 제7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은 그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을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제5조 부터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의처

별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10조까지의 죄를 청소년에게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수 있다.

7) 8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에게...’ 혹은 ‘형법 제301조... 399조의 범죄를 청소년에게 범한 자와...’라고 고치는 것이 문장구조가 이해하기 쉽고, 어색한 문장을 개선하여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8) 3항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 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라는 번역투의 문어체 문장을 개선하여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신상등을 공개할 결정을 하면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색하지 않고 쉬운 문장구조라고 생각된다.

9) ‘연령’은 ‘나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3항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관계’는 ‘대상청소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순화된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11) ‘정황’은 ‘사정’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다.

12) 4항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公開의 경우’는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제2항에서 규정된 신상공개는’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3) 4항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이해를 돕는 것이다.

14) 4항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青少年’는 ‘제5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청소년과...’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라고 어색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 본다.

15) 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은 ‘제2항에 규정한’ 혹은 ‘제2항에 규정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법령에서 문어체 문장구조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러한 표현이 법령을 권위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표현이 일반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규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본다.

17)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순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적용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다고 본다.

제21조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본조의 경우 1항에서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에서 ‘이수’는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마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제어에서 ‘이수권고’라고 하였으므로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마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 될 것이다.

2) 2항의 경우 문장이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순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 권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어색하지 않다.

제22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¹³⁾
 -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2조의 표제어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정보를 등록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1항의 경우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개선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성폭력범죄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본다.

3) 1항의 후단 역시 ‘제20조제2항제6호 부터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부터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4) ‘성명’은 ‘이름’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실제 거주지의 주소’는 ‘실제 살고 있는 곳 주소’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라 생각된다.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¹⁴⁾하여야 한다.
-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표제는 ‘신상정보를 등록’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1항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어색하지 않은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3) 2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서 규정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4) 3항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된’ 혹은 ‘규정한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이라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4항의 경우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에서 규정된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6) 4항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응하다’는 문어체 표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서 한

14) ‘폐기’도 한자어를 한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없앤다’라고 순화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5항에서 ‘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은 ‘신상정보의... 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된다.

제24조 (등록정보의 열람)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¹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4조의 표제어는 ‘등록정보를 열람’이라고 고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2) 제24조 1항의 경우 문어체문장의 범문을 개선하여 일상적인 어법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권위적이지 않아 좋을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3) 2호에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교육기관 등의 장...’이라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4)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만 동항 제3호에 규정된 학원 및...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5) ‘반출’은 운반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밖으로 혹은 다른 곳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II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2항의 경우에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정보를 열람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쉽고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제25조 (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표제어는 ‘등록정보를 통보 및 관리 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이다.

제26조 (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6조는 ‘등록정보를 등록...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라고 하여 조사를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

2) ‘종사’는 ‘관리업무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자’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법령의 문장을 개선하고 순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제27조 (벌칙)

- 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1) 1항의 경우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된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라고 고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를 가진다.

2) ‘거짓의 신상정보’는 ‘거짓된 신상정보’라고 바꾸는 것이 어법에 맞다.

3) ‘반출’은 있던 곳에서 외부로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의 반출’은 정보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것이므로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로 고치는 것이 순화된 문장구조가 될 것으로 본다.

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8조의 표제어는 ‘등에의’라는 중복된 조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표제어가 될 것이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이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제2호의 경우에도 ‘각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이어서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3호의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에서 규정한’ 혹은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5) 4호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혹은 ‘규정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이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5호의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규정한(혹은 규정된)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문장을 바꾸는 것이 직접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7) 6호에서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서 규정된(규정한)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8) 제7호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혹은 10조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장구조에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9) 8호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문장을 바꾸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올바른 문장구조를 가진 것이 될 것이다.

10) 3항의 경우에 ‘제2항에 규정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절차 범위 등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제2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29조 표제어는 ‘취업자에게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이라고 표제어를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본문의 경우에도 조사등을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일반인에게 어색하고 어려운 문장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제30조 (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제30조의 표제어는 ‘해임요구 등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표제어를 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라 본다.

2) 1항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에 규정된(혹은 규정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2항의 경우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에서 규정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고 어색하지 않으면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4) 3항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을 취소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법령이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버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제4항의 경우에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처분에’라고 하면 될 것이다.

6) 5항의 경우 ‘제3항에서 규정한... 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이의를 제기한...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로 이해하기 쉽고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 제6항의 경우에도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라고 하는 것이 관형격조사를 남발하여 만들어진 법령의 번역투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들어가는 말

본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에 특례를 인정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처럼 그 사용이 가족구성원들이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은 무엇보다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순화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 본법의 문장구조의 개선과 순화를 위해 가능하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일상적인 표현이나 문장구조로 개선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 법을 순화하거나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쉬운 문장구조를 찾아보았다.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家庭暴力犯罪의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行함으로써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2.12.18>

1) 전체적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조문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번역투의 문장구조여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자가 속한 환경을 바꾸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 성격과 행동을 고치기 위한 보안처분을 하여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産上 被害를 수반하는 行爲를 말한다.
2. “家庭構成員”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가. 配偶者(事實上 婚姻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配偶者관계에 있었던 者
 - 나. 自己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關係(事實上의 養親子關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者
 - 다. 繼父母와 子의 關係 또는 嫡母와 庶子의 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者
 - 라. 同居하는 親族관계에 있는 者
3. “家庭暴力犯罪”라 함은 家庭暴力으로서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 가. 刑法 第2編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중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第260條(暴行, 尊屬暴行)第1項·第2項, 第261條(特殊暴行) 및 第264條(常習犯)의 罪
 - 나. 刑法 第2編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중 第271條(遺棄, 尊屬遺棄)第1項·第2項, 第272條(영아유기),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및 第274條(兒童酷使)의 罪
 - 다. 刑法 第2編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중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第277條(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第278條(特殊逮捕, 特殊監禁), 第279條(常習犯)(第276條, 第277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0條(未遂犯)(第276條 내지 第279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 라. 刑法 第2編 第30章 脅迫의 罪중 第283條(脅迫, 尊屬脅迫)第1項·第2項, 第284條(特殊脅迫), 第285條(常習犯)(第283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6條(未遂犯)의 罪
 - 카. 各目 내지 各目的 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
4.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 및 家庭構成員인 共犯(이하 “行爲者”라 한다)을 말한다.
5.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6. “家庭保護事件”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保護處分의 대상이 되는 事件을 말한다.
7. “保護處分”이라 함은 法院이 家庭 保護事件에 대하여 審理를 거쳐 行爲者에게 과하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말한다.
8. “兒童”이라 함은 兒童福祉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1) 제2조에서 ‘...라 함은’이라는 표현은 문어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령이 권위적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이란’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다.

2) 5호에서 “‘被害者’란 家庭暴力犯罪 때문에 직접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

3) 7호에 ‘제40조 규정에 의한’은 ‘제40조에서 규정한’ 혹은 ‘40조에서 규정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4) ‘내지’는 ‘부터’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 3 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 適用한다.

1) ‘가정폭력범죄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문이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 4 條 (申告義務等)

①누구든지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搜查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兒童의 教育과 保護를 담당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

2. 兒童, 60歲 이상의 老人 기타 正當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등을 담당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

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礙人福祉法에 따른 障礙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

③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에 따른 家庭暴力 관련 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 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相談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申告한 者(이하 “申告者”라 한다)에 대하여 그 申告行爲를 이유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2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개선하는 것이 간결하고 일상적인 표현의 문장구조라고 생각된다.

2) 제2항 1호에서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정상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の...’은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자 혹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순화된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4) 3호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라는 표현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종사자’란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법을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3항에서 ‘근무하는’이라는 표현도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일하는’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6) 4항에서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1항부터 3항에 규정된’ 혹은 ‘1항부터 3항에서 규정한’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후단의 문장구조 또한 개선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고 본다.

第 5 條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즉시 現場에 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被害者の 家庭暴力관련相談所 또는 保護施設 引渡(被害者の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被害者の 醫療機關 引渡
4. 暴力行爲의 재발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를 申請할 수 있음을 통보

1) 제5조의 문장 또한 문어체적인 법문의 형태와 어색한 문장구조로 이루어져 일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으로 가서 다음 각호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아 어색하지 않고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현장에 임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2) 1호의 경우에도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어색한 문장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폭력행위를 막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및 범죄수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3) 2호에서 ‘인도’는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으로 한자어를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불필요한 한자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호시설로 ‘보냄’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4) 3호에서 문장구조 역시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랜 관행에 의하여 번역투의 문장이 오히려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넘김’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4호의 문장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폭력행위가 다시 생기면 제8조에서 규정된 혹은 규정한 임시조치...’라고 개선 또는 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없애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가 될 것으로 본다.

第 6 條 (告訴에 관한 特例)

- ①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를 告訴할 수 있다.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行爲者인 경우 또는 行爲者와 공동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경우에는 被害者의 親族이 告訴할 수 있다.
- ② 被害者는 刑事訴訟法 第2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行爲者가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인 경우에도 告訴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이 告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被害者에게 告訴할 法定代理人이나 親族이 없는 경우에 利害關係人의 신청이 있으면 檢事는 10日 이내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1) 1항은 ‘행위자’는 가정폭력을 행한 행위자를 말하는 것인데 ‘행위자’란 표현보다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혹은 폭력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第 7 條 (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司法警察官은 家庭暴力犯罪를 신속히 搜查하여 事件을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은 當해 사건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7조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검사에게 피의자와 사건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제어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넘겨줌’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므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혹은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3) ‘당해사건’은 ‘해당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식의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는 문어체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라고 순화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8 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 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8조의 표제어를 일상적인 문장구조인 ‘임시조치를 청구 등’라고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된다.

2) 1항에서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시제 역시 법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발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은 적절하지 않은 시제와 태의 사용이 어색하다. 그러므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시제도 맞고 피동과 수동의 어법에도 맞는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4)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라고 하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 할 것이다.

5) 2항의 경우에도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검사는 행위자가 제1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항에서 청구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선된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6) 3항에서도 문어체적이고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를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第 9 條 (家庭保護事件의 處理)

① 檢事는 家庭暴力犯罪로서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爲을 고려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被害者의 의사를 尊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1) 제9조의 표제어는 관형격조사를 빼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의 문장이다.

2) 1항은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檢事는 家庭暴力犯罪를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爲을 고려하여 이 法에 따라서 保護處分을 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되고 개선된 문장이라고 본다.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한자어의 사용을 줄여서 일상적인 표현의 문장이 될 것이라 본다.

3) 2항 제1호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혹은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4) 2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가진 우리 법령은 오랫동안 일본식 문장에 길들여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第10條 (管轄)

- ①家庭保護事件의 管轄은 行爲者의 行爲地·居住地 또는 現在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으로 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해당地域의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決定은 單獨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

1) 제1항의 경우 불필요한 한자어를 없애는 방향으로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은 ‘다만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이라고 순화하면 이해하기 쉽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없애서 권위적인 법문의 이미지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의미의 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불필요한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불필요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본다.

2) 2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은 심리와 결정을 단독판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구조일 것이다. 혹은 ‘단독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 결정한다.’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第11條 (檢事の 送致)

- ①檢事は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을 管轄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送致하여야 한다.
- ②檢事は 家庭暴力犯罪와 그 외의 犯罪가 競合하는 때에는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事件만을 분리하여 管轄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1) 표제어는 ‘검사가 송치’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다.

2) 1항에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혹은 ‘제9조가 규정한 대로’ 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쉽다고 본다.

3) 2항의 시제를 바로 잡아 ‘범죄가 경합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구조이다.

4)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에서 ‘송치’는 법원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일반인은 ‘송치’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용어 또한 아니다.

第12條 (法院의 送致) 法院은 行爲者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家庭 保護事件의 管轄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被害者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표제어는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여 만드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이 송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제어가 될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해도 일본식 표제어를 붙이는 방식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2)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은 ‘행위자의 피고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인 표현이다.

3) ‘이 법에 의한’은 ‘의한’이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문장구조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 ‘이 법에 규정한’ 혹은 ‘이 법에 따라’, ‘이법에서’라고 하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본다.

4) ‘保護處分에 處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은 시제와 문어체 문장을 개선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시제를 바로잡고,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다.

第13條 (送致時的 身柄處理)

- ①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送致決定이 있는 경우 行爲者를 拘禁하고 있는 시설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 法院이 있는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郡에서는 24時間 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 이내에 行爲者를 管轄 法院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行爲者에 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刑事訴訟法 第92條, 第203條 또는 第205條의 拘束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拘束令狀의 效力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할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송치시 신병처리’

2) ‘身柄처리’에서 ‘신병¹⁶⁾’은 그 사전적 의미가 ‘보호해야할 당사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 ‘몸의 병’이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13조 법문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행위자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처리’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1항에서 ‘...12조의 규정에 의한’은 ‘12조에 규정에 따라서’ 혹은 ‘12조에 규정대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쉬운 문장구조이고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4) 1항 후단에서 ‘이 경우 法院은 行爲者에 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는 ‘이 경우 법원이 행위자를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문장이 어색하고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16) ‘신병’은 대표적인 일본식 표기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신체’라고 하면 될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의 규정에 의한...’은 일본식 문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6) 3항에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는 ‘후단의 규정에 따라서’ 혹은 ‘후단에 규정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第14條 (送致書)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를 보내야 한다.

②第1項의 送致書에는 行爲者의 姓名·住所·生年月日·職業·被害者와의 關係 및 行爲의 概要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라서’ 혹은 ‘규정한’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송치’는 ‘넘겨준다’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

3) ‘성명’은 ‘이름’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타 참고자료’는 ‘그 외의 참고자료’ 혹은 ‘그 밖의 참고자료’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다.

5) ‘첨부’는 ‘덧붙이다’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를 덧붙여야 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15條 (移送)

①家庭保護事件을 送致받은 法院은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適正한 調査·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當해 事件을 즉시 다른 관할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第1項 規定에 依한 移送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添附하여 行爲者와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1항은 ‘가정보호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이라고 하여도 무방하고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2) ‘인정한 때에는...’을 시제를 맞추어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이다.

3) ‘당해사건’은 ‘해당사건’으로 하는 것이 ‘당해’는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第16條 (保護處分の 效力)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분이 確定된 때에는 그 行爲者에 대하여 同一한 犯罪事實로 다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40條의 規定에 의한’은 ‘제40조에 규정한 보호처분...’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에게’라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에 대하여’는 번역투의 문장구조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넘겨진 경우...’ ‘제46조에서 규정한 대로 넘겨진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이어서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第17條 (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送致된 때로부터 時效進行이 停止되고 그 事件에 대한 第37條第1項의 不處分の 決定(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確定된 때 또는 第27條第2項·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의 1인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 대하여 效力을 미친다.

1) ‘1항에서 당해 가정보호사건이...’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는 ‘법원에 넘겨진 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3) ‘第27條第2項·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은 ‘제27조 제2항... 46조에 규정에 따라서 넘겨진 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고 불필요하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송치’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 순화된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4) 2항에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라는 문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18條 (秘密嚴守등의 義務)

①家庭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 및 그 執行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 補助人 또는 相談所등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 및 第4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者(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②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에 對하여는 行爲者, 被害者, 告訴人·告發人 또는 申告人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特定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敎育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學校의 敎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事實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8>

1) 표제어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표현이 ‘비밀엄수등을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2) 1항에서도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관형격조사를 생략하거나 조사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의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를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누설’은 비밀의 누설죄 등에서 법령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 직무상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타인이 알게 하면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누설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4) 2항에서 ‘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은 ‘이 법에서 규정한 가정보호사건은’이라고 하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5) ‘성명’은 ‘이름’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령’은 ‘나이’로 순화하고 ‘용모’는 ‘생김새’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3항에서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는 ‘피해자가 보호하는 아동이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범문도 간결하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7)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은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자는’ 혹은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종사자’란 표현의 한자어를 사용하는 태도는 법령이 아직도 권위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한자어식 문어체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19條 (調査·審理의 方向)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는 醫學·心理學·社會學·社會福祉學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行爲者·被害者 기타 家庭構成員의 性行·經歷·家庭狀況과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을 밝혀서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處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9조의 본문에서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문어체 문장으로 되어 일반인에게는 어색한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심리할 때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2) ‘기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는 ‘그 밖의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第20條 (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위하여 法院에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調査官의 資格·任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1) 1항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위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순화된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2) 2항의 경우 ‘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사관의 자격·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한자어라고 한다.

第21條 (調査命令) 判事は 調査官에게 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의 審問이나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경우에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 가정구성원을 심문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실태등을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第22條 (專門家의 意見照會)

①法院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學者·社會福祉學者 기타 관련 專門家에게 行爲者·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精神·心理狀態에 대한 診斷所見 및 家庭暴力犯罪의 原因에 관한 의견을 照會할 수 있다.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結果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 표제어는 ‘전문가의 의견조회’라는 표현보다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음’이라고 하는 순화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2) 1항에서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는 ‘그 밖에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다.

3) 1항의 후단에서도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도 ‘전문가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을 물어 볼 수 있다’ 혹은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1항의 경우에도 ‘...함에 있어서’라는 문어체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조사심리하면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견조회...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상적이라 본다.

第23條 (陳述拒否權의 告知) 判事 또는 調査官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할 때에 미리 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제23조의 표제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어법에도 맞는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아니지만 일본식 법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러한 표제어의 문장구조를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2)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는 ‘미리 행위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의 문어체 문장을 개선하여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가 되게 할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거부¹⁷⁾’는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¹⁸⁾을 말하는 한자어이다. ‘거부’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본조에서 표제어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4) ‘진술’ 역시 법령에서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진술’이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어서 일상적인 표현과 법률용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알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¹⁸⁾

第24條 (召喚 및 同行令狀)

① 判事は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行爲者・被害者・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 判事は 行爲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1) ‘소환’은 불러들이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이다. 법령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언론의 보도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이 또한 결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한자어 또한 순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름’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어떨

17) 가능하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혹은 쉬운 말로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8) ‘진술’을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라고 하면 법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일까?

까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은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본다.¹⁹⁾

2) 1항의 경우에 시제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판사는 조사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가 될 것이다.²⁰⁾

3) ‘기타 참고인’은 ‘기타’를 사용하지 않고 순화하여 ‘그 밖의 참고인’ 혹은 ‘그 이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법령에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순화하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4) 그러므로 본조 제1항은 ‘판사는 조사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밖의 참고인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화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5) ‘기일을 지정하여’는 ‘기일’의 의미가 ‘날짜를 정하여’라는 의미의 한자어로 그 자체에 날짜를 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일을 지정하여’는 동일한 의미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날짜를 지정하여’라고 혹은 ‘날짜를 정하여’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문장구조를 순화하고 권위적인 법령의 태도를 고쳐나가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6)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은 ‘정당한 이유없이 1항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7)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은 ‘부름에 오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순화된 문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 표제어에 한자어는 그대로 둔다고 하여도 본문속의 한자어는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20)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5條 (緊急同行令狀) 判事は 行爲者が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の 保護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경우 전체적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순화되고 쉬운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는 행위자가 부름에 오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름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여 순화된 문장구조가 될 것이다.

第26條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行爲者の 姓名·生年月日·住居, 行爲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効期間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執行에 착수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判事が 署名·捺印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서 ‘성명’은 ‘이름’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한자어 이지만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순화하는 것이 좋다.

2)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는 ‘인치’가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들이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이고, ‘수용’은 어떤 장소에 넣어 모아둔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그런데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는 인치할 장소, 수용할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끌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넣어 둔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로 불러올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된다.

3) ‘서명·날인’은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고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第27條 (同行令狀의 執行등)

- ①同行令狀은 調査官이나 法院의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이하 “法院公務員”이라 한다)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
- ②法院은 行爲者의 所在不明으로 인하여 1年 이상 同行令狀을 執行하지 못한 경우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 ③法院은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行爲者의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표제어는 ‘동행영장을 집행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2) 1항에서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은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을 권위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표현인 ‘사법경찰관리에게’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장구조가 된다고 본다.

3) 2항의 경우에 어순을 바꾸어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행위자가 1년이상 소재불명으로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문장이 간결하게 된다고 본다.

4) ‘송치’는 ‘넘긴다’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3항의 경우에도 시제를 바꾸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

第28條 (補助人)

- ①行爲者는 자신의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 ②辯護士, 行爲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형제자매, 相談所등의 相談員과 그 長은 補助人이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者를 補助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辯護士가 아닌 補助人은 金品·響應 기타 利益을 받거나 받을 것을 約束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法院은 行爲者가 刑事訴訟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辯護士를 行爲者의 補助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補助人에게 지급하는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개정 1999.12.31>

1) 1항의 경우에 관형격조사를 없애고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순화된 문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문어체적인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라고 문장구조를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3) ‘향응’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그 한자어를 쓰거나 읽기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적당한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향응’은 사전적 의미가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되는 표현은 ‘좋은 대접²¹⁾’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 ‘기타 이익’은 ‘그 밖에 이익’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5) 2항에서 ‘공여’는 ‘어떤 물건이나 이익에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제3자뇌물공여죄등 ‘공여’라는 표현은 법령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오

21) 공직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우리 법원의 판결문 속에서도 ‘대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 2014 판결).

히려 ‘제공’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제공22)’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제공도 한자어 이지만 일상적으로 ‘공여’보다는 ‘제공’을 잘 사용하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6) 4항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이라고 하여 시제를 현재형으로 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이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7) 5항에서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혹은 ‘제4항에서 규정된’ 혹은 ‘제4항에서 규정된...’이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장구조가 어색하면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第29條 (臨時措置)

①判事は 家庭保護事件의 원활한 調査·審理 또는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行爲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住居 또는 占有하는 房室로부터의 退去等 隔離
2. 被害者의 住居, 職場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接近禁止
3.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의 委託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同行令狀에 의하여 同行된 行爲者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行爲者에 대하여는 行爲者가 法院에 引致된 때로부터 24時間 이내에 第1項의 措置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2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 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사안에서, 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형법 제130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위 시주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3자뇌물수수의 죄책을 인정한 판례에서도 판결문의 내용속에서는 ‘공여’를 ‘제공’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3424 판결).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③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 ④法院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行爲者의 補助人이 있는 경우에는 補助人에게, 補助人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行爲者가 지정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行爲者에게 辯護士등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으며 第49條第1項의 抗告를 제기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 ⑤第1項第1號·第2號의 隔離 및 接近禁止期間은 2月, 同項第3號·第4號의 委託 및 留置期間은 1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그 期間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各 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⑥第1項第3號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行爲者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⑦民間이 운영하는 醫療機關등에 대하여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미리 告知하고 同意를 얻어야 한다.
- ⑧判事는 第1項 各號에 규정된 臨時措置의 決定을 한 때에는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또는 拘置所 소속 矯正職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⑨行爲者, 그 法定代理人이나 補助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決定의 取消 또는 그 종류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 ⑩判事는 職權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臨時措置를 取消하거나 그 종류를 變更할 수 있다.
- ⑪第1項第3號의 委託의 대상이 되는 醫療機關 및 療養所의 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1) 1항의 문장구조를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원활하게....’라고 하는 것이 관형격 조사를 남발한 법령의 일본식 번역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1항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문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구조가 되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3) 1항의 경우 시제도 바꾸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혹은 ‘인정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맞는 어법이라고 본다.

4) 제1항 1호에서도 관형격조사를 없애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²³⁾에서 퇴거²⁴⁾ 등 격리²⁵⁾’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3호에서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의 委託’은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부탁’이라고 하면 될 것을 ‘요양소에의’라고 하는 것은 관형격조사를 낱말한 일본식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탁’은 어떤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보다는 ‘부탁’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므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탁’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옳다.

6) 4호의 경우에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²⁶⁾’라고 하면 될 것이다.

7) 2항에서도 ‘동행영장에 의하여’라는 문어체적인 문장구조를 ‘동행영장으로’라고 하여 방법을 의미하는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

23) ‘방실’은 방이나 거실을 합성한 한자어로 생각된다. 그런데 ‘방실’은 사전적 의미가 ‘식물의 비어있는 곳’ 심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법령에서 그 의미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를 풀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거주나 점유하는 공간 혹은 거주나 점유하는 곳’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문장이 될 것이다. ‘방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거주나 점유의 장소임을 문장 전체를 통하여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방실’이라는 한자어를 합성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해석할 필요도 적다고 본다.

24) ‘퇴거’는 다른 곳으로 물러가거나 옮기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법령에서는 흔히 사용하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옮김’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5) ‘격리’는 ‘다른 것과의 사이를 떼어 놓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이다. ‘격리수용’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떼어놓음’이라고 순화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6) ‘유치’는 사업등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유치’는 꺾어서 데려온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유치’는 이런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호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의미를 연결하여 ‘유치장에 둠’이라고 순화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라 할 것이다.

8)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장구조에 맞다.

9) ‘인도된 行爲者에 대하여’는 ‘인도된 행위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다.

10) 3항의 경우에도 문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통지²⁷⁾하여야 한다.’

11) 4항 또한 ‘法院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措置를 할 때에는’이라고 시제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 된다.

12) ‘이 경우 第1項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는 ‘제1항 4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이라고 어법을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3) ‘第49條第1項의 控告를 제기할 수 있음을 告知²⁸⁾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라고 문장구조 및 용어를 순화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4) ‘격리’는 ‘빼어내거나’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 ‘위탁’은 보다 일상적인 ‘부탁’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유치’는 물건을 맡아두거나 피고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두는 기간’이라고 순화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지금은 어색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사용하면 불필요한 한자어도 줄일 수 있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고쳐진다고 본다.

17) ‘1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서는 ‘1개월’과 ‘1월’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일상적으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므로 이를 순화하여 일상적인 표현인 ‘1개월’이라고 하고 그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27) ‘통지’ 역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리다’로 순화하는 것도 적절하다.

28) ‘고지’는 개시나 글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림’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적절하다고 본다.

18) ‘다만, 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 그 期間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는 전체적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투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이고, 시제도 맞아 올바른 문장이 된다.

19)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각 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본 문장의 경우에도 번역투의 문어체 문장을 그대로 두어 어색한 문장구조가 되고 있다. 결정으로 1회까지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으로 한번만 각기간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고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

20) 7항의 경우에도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어색하다. ‘民間이 운영하는 醫療機關등에게 위탁하고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이다.

21) 시제 또한 고쳐서 ‘부탁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간결한 문장이다.

22)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사항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23) 고지는 알림으로 순화하면 될 것이다.

24) 8항에서 ‘判事は 第1項 各號에 규정된 臨時措置의 決定을 한 때에는’는 시제와 조사를 바꾸어 일상적인 어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25) ‘拘置所 소속 矯正職公務員으로 하여금’이라는 문어체 문장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어체 문장을 고집하는 것은 법령을 권위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이고 일상적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문장 구조라 할 것이다.

26) 제9항에서 ‘補助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決定의 取消 또는 그 종류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문장구조를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조인은 제 1항에서 규정된 임시조치결정을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문장이 번역투를 벗어나는 작업도 개울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27) 10항의 경우에도 조사나 문어체적인 문장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직권 또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해 임시조치’는 ‘해당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28) 11항에서 ‘기타 필요한 기준’은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불필요한 의미 없이 사용되는 한자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차피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쉽게 이해된다면 해석의 가능성도 쉽게 될 것으로 본다.

第30條 (審理期日의 指定)

① 判事は 審理期日을 指定하고 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家庭保護事件의 要旨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理期日은 補助人과 被害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30조의 제목 역시 ‘심리기일을 지정’이라고 하여 일상적인 표현

으로 조사를 바꾸는 것이 번역투의 제목을 달고 있는 우리 법문의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인이 쉽게 제목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제30조 제1항에서 ‘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는 ‘행위자를 불러 들여야 한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는 불필요한 한자어를 순화하여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지도 기별하여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이지만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지 역시 알게 하는 것이므로 문장 속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혹은 피해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라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

第31條 (審理期日의 變更) 判事는 職權 또는 行爲者나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變更된 期日을 行爲者·被害者 및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 제목은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제목에서 벗어나 ‘심리기일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2)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²⁹⁾을 變更할 수 있다.’는 문장구조 역시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에서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조인이 청구하면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어색하지 않을 것

29) ‘변경된 기일’에서 ‘기일’이라는 표현의 한자어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이 또한 굳이 사용이 필요 없는 한자어라 생각된다. ‘기일’이라는 표현의 한자어를 사용하여도 물론 무방하겠지만, ‘날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가능하면 우리말로 순화된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다. ‘...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투의 문장이다.

第32條 (審理의 非公開)

① 判事は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證人으로서 召喚된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은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判事에 대하여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は 그 許可여부와 公開法廷외의 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訊問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의 제목을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심리를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2) 제1하에서 ‘判事は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라는 문어체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면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3) 2항의 경우에도 ‘소환’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증인으로 불려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4) 전체적으로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증인으로 불려온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비공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개선된 문장이어서 어색하지 않다.

5) ‘公開法廷외의 장소에서의 訊問등’는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는 처소격 조사인 ‘에서’를 사용하면 ‘장소에서’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중복된 문장구조를 가지게 되어 문장의 간결성만을 해치고 어법에도 맞지 아니한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공개법정외에서 신문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證人訊問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는 문장구조를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개선하여 일본식의 번역투의 문어체 문장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증인신문방식이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문

장구조라 할 것이다.

第33條 (被害者の 陳述權 등)

① 法院은 被害者の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申請人이 이미 審理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審理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에 관한 意見を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法院은 審理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調査官에게 意見を 陳述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는 公正한 意見陳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行爲者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被害者는 辯護士,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형제자매, 相談所 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意見を 陳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喚을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1) 1항의 문장구조는 번역투의 문어체 문장으로 이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法院은 被害者の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는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서나, 이해를 위하여 일상적인 표현의 문장구조가 될 것이다.

2) ‘다음 各號의 1에’에서 관형격조사를 생략해도 무방한 문장이 되므로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3) ‘진술하여’는 ‘이야기 하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별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4) 2호의 경우에 ‘진술로 인하여’는 번역투의 문장으로 ‘진술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직설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다.

5) 2항의 경우에도 문장구조를 문어체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1항에서 규정한 피해자를 신문할 때에는 해당...’이라고 개선하는 우리 어법에 맞고,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6) 3항의 경우에도 문장을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태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법원은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7) 3항의 후단에서 ‘이 경우 判事는 공정한 意見陳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行爲者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는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8) 4항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4항에서 ‘그 長으로 하여금...’은 ‘그 장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0) 제5항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喚을’은 ‘제1항에서 규정된 신청인이 부름을 받고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1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으로 간결하게 문장구조를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34條 (證人訊問·鑑定·通譯·翻譯)

- ①法院은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을 命하며 通譯 또는 翻譯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과 鑑定·通譯 및 翻譯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

用한다.

③證人·鑑定人·通譯人·翻譯人에게 지급하는 費用·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 및 刑事訴訟費用등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개정 1999.12.31>

1)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은 ‘비용·숙박비 그 밖에’ 비용 혹은 ‘그 이외의 비용’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2항의 경우 어순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관한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순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第35條 (檢證·押收·搜索)

①法院은 檢證·押收 및 搜索을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押收 및 搜索에 관한 규정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1) 제35조2항의 어순을 바꾸어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본조의 내용이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에 관련된 규정을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준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가정보호사건에 준용하는 것으로 이를 앞에서 두어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관한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36條 (協調·援助)

①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한 경우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 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에 대하여 協調와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청을 받은 關係 行政機關, 相談所等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拒否할 때에는 正當한 理由를 제시하여야 한다.

1) 1항의 경우에 문장구조를 일상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필요가 있으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2) 협조는 도움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를 기타는 ‘그 밖에 단체에게’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4) 2항에서 ‘기타 단체가...’는 ‘그 밖에 혹은 그 이외의 단체가’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37條 (不處分의 決定)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處分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5.1.27>

2.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必要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習癖등에 비추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行爲者,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표제어는 ‘불처분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1항은 시제를 바꾸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3) 2호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여 시제를 바꾸고 태를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4) 3호에서 ‘성행’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성행’과 ‘성격’이 반드시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성격, 성격이나 행동이라고 풀어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5) 그리고 ‘습벽’은 읽기 어려운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습벽은 ‘버릇’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6) ‘사유에 의하여...’는 우리 문장구조에 맞게 ‘사유에 따라서’라고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7) 2항에서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은 관형격조사를 바꾸고 시제를 바꾸어 ‘불처분을 결정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8) 제2항 1호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번역투의 문장구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할 것이다.

9) ‘송치’는 ‘넘김’이라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

10) 2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넘긴 사건인 경우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11) 3항의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에는...’이라고 하여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시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12) ‘통지’는 ‘알려주다’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38條 (處分の 期間等)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處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處分の 決定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送致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移送받은 경우에는 移送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번역투의 어색한 문어체 문장에서 ‘가정보호사건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본다.

第39條 (委任規定)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1) 문어체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家庭保護事件을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第40條 (保護處分の 決定等)

① 判事は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1. 行爲者가 被害者에게 接近하는 行爲의 制限
2. 親權者인 行爲者의 被害者에 대한 親權行使의 制限
3.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社會奉仕·受講命令
4.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保護觀察
5.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保護施設에의 監護委託
6. 醫療機關에의 治療委託
7. 相談所등에의 相談委託

② 第1項 各號의 處分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 第1項 第2號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被害者를 다른 親權者나 親族 또는 適當한 施設로 引渡할 수 있다.

④ 法院은 保護處分의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檢査, 行爲者,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保護處分을 委託받아 행하는 保護施設, 醫療機關 또는 相談所등(이하 “受託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機關이 民間에 의하여 운영되는 機關인 경우에는 그 機關의 長으로부터 受託에 대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 第1項 第3號 내지 第7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行爲者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 1) 표제어는 ‘보호처분을 결정 등’이라고 하는 것 일상적인 표현이다.
- 2) 1항 ‘판사가 심리한 결과....’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 3) 1항에서 본문의 시제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태를 바꾸어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保護處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1호에서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이다.
- 5) 2호는 ‘친권자인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이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6) 3호와 4호에서 ‘법률에 의한’은 ‘법률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문장구조이다.

7) ‘保護施設에의 監護委託’은 ‘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문장이다. 여기서 굳이 ‘보호시설에의’라고 하는 것은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방관하는 대표적인 문구라 할 것이다.

8) ‘에’가 이미 처소격조사이므로 이를 관형격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치료기관에 치료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본다.

9) 7호의 경우에도 ‘상담소등에 상담위탁’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10) 3항에서 ‘인도’는 물건이나 사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인도는 ‘건네준다’고 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적당한 시설로 보내준다³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순화라 생각된다. ‘인도’는 한자어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4항의 경우에도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12) ‘다만, 受託機關이 民間에 의하여 운영되는 機關인 경우에는 그 機關의 長으로부터 受託에 대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전체적으로 문장구조 개선하여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이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그 기관의 장에게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3) 5항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14) ‘송부’는 보내준다는 의미이므로 그냥 ‘보내준다.’라고 순화하는

30) 통일성보다는 그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

것이 적절할 것이다.

第41條 (保護處分の 期間)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の 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으며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
수는 1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1) 제41조의 표제어는 ‘보호처분할 기간’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2)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の 期間은’에서 ‘제4호부터 제7호
까지 보호처분을 할 기간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순화된 문
장구조이다.

第42條 (沒收) 判事は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 決定으로 家庭暴力犯罪에 제공
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件으로서 行爲者외의 者の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 1) 第42條의 경우에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
件으로서 行爲者외의 者の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는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람
직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그리고 시제를 바꾸어 어법에도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했거나 하였
던 물건 중 행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 할 수 있
다’라고 하는 것이 개선된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43條 (保護處分決定의 執行)

①法院은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保護處分の 7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保護處分の 執行에 있어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
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 保護觀察등
에 관한法律 및 精神保健法을 準用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항의 경우에 ‘受託機關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保護處分の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는 문어체 문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탁기관소속 직원에게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2) 2항의 경우에도 문장구조를 일상적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어색한 문어체 문장이다. 법령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인데 이는 번역한 법령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第44條 (報告와 意見提出등) 法院은 第40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 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에 대하여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1) 본조에 ‘내지’는 ‘부터’라고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2) 그리고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은 문장의 시제를 맞게 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을 결정 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그리고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는 문어체 문장의 번역문을 개선하여 ‘수탁기관은 장에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고 개선된 간결한 문장구조가 될 것이다.

4) ‘그 執行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을 초래한다. ‘그 집행에 대하여’에서 ‘대하여’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 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第45條 (保護處分の變更)

①法院은 保護處分이 進行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請求에 따라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保護處分の 種類와 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の 種類와 期間을 變更하는 경우 중진의 處分期間을 합산하여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期間은 1年을,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期間은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處分變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검사, 행위자, 法定代理人, 補助人,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受託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 1) ‘보호처분을 변경’이라고 조사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란 현재시제를 개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태를 바꾸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3) ‘受託機關의 長의 請求에 따라’는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4)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保護處分の 種類와 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는 ‘1회에 한하여’라는 번역투의 한자어식 표현을 개선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번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으로 한번은 보호처분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5) 2항에 법령에서 흔하게 표현되는 문장구조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일본식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혹은 규정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본다.
- 6) ‘합산하여’는 ‘더하여’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7) 3항에서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제1항의 변경처분을 결정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1) 제46조의 표제어는 ‘보호처분을 취소’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2)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송치는 ‘넘겨줌’으로 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第47條 (保護處分の終了) 法院은 行爲者の 性行이 矯正되어 정상적인 家庭生活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保護處分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護處分の 全部 또는 一部를 終了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성행’은 성품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상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정’은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정’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인도 빈번하게 들어 알 수 있지만 법문의 내용속에서 그 한자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장속에서는 한자어를 순화하여 ‘성격이나 행동이 바로잡혀 정상적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순화된 문장구조여서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 그리고 시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은 태와 시제를 바로잡아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생각된다.

3) ‘종료’는 ‘마침’으로 순화하여 ‘일부를 마칠 수 있다’ 혹은 ‘일부를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第48條 (費用의 負擔)

- ①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決定 또는 第40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는 委託 또는 保護處分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한다. 다만, 行爲者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가 이를 負擔할 수 있다.
- ②判事는 行爲者에 대하여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爲者가 負擔할 費用의 計算, 請求 및 支給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1) 1항에서 ‘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決定’은 ‘...3호에서 규정한 위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2) ‘다만, 行爲者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은 시제를 바꾸어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본다.

3) 2항의 경우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일상적인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판사는 행위자에게 제 1항 본문에서 규정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여서 어색하지 않고 번역투의 법문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예납은 한글화할 경우 예납(例納)³¹⁾과 혼돈될 가능성이 크다. 2항의 예납의 의미는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을 말하므

31) ‘예납’은 전례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 이를 순화하여 ‘비용을 미리 낼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본다.

5) 3항의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된 행위자가...’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이다.

6) ‘비용의 계산’을 ‘비용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第49條 (抗告)

①第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延長 또는 變更의 決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第40條의 保護處分, 第45條의 保護處分の 變更 및 第46條의 保護處分の 取消에 있어서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은 家庭法院本院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法院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處分の 決定을 한 경우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法院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18>

③抗告의 제기기간은 그 決定을 告知받은 날부터 7日로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는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제29조에서 규정한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이다.

2) 1항에서 ‘事實誤認이 있는 때’는 ‘사실오인이 있을 때’라고 하여 시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문장구조라 할 수 있다.

3)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은 또한 시제를 바꾸어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4) 2항의 경우에도 문어체적인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법원이 제37조에서 규정한 불처분의 결정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5) ‘항고의 제기’에서 ‘제기’는 소송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문장을 고려하여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라고 개선하고 순화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第50條 (抗告狀의 제출)

- ①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抗告狀을 제출받은 法院은 3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기록을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표제어는 항고장을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구조이다.
- 2) 1항의 경우 ‘抗告를 함에 있어서는...’이라고 하는 문어체 문장을 개선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 3) ‘첨부하여’는 ‘덧붙여’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송부’는 기록 따위를 부쳐 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항고 법원에 보낸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무방하고 이렇게 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第51條 (抗告의 裁判)

-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에 違反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다른 管轄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還送 또는 移送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破棄하고 스스로 상당한 臨時措置, 不處分 또는 保護處分의 決定을 할 수 있다.

- 1) 제51조의 표제어는 항고의 재판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고 ‘항고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본다.
- 2) 1항에서 ‘抗告의 節次가’ 역시 관형격조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는 관행은 번역투의 문장구조에 익숙해진 탓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항고절차가’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은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는’이라고 문장을 고쳐서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태를 바꾸고 시제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4) ‘기각’은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물리침’이라고 순화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본다.³²⁾

5) ‘환송’은 ‘되돌려 보냄’이라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

6) ‘이송’은 ‘다른 법원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순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은 시제와 태를 바꾸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8) ‘原決定을 破棄하고’는 ‘원결정을 깨고’라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³³⁾

9) ‘保護處分の 決定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번역투의 문장구조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第52條 (再抗告)

①抗告의 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法令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1) 1항의 경우에 문장구조를 일상적으로 개선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라고 개선하는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32) 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상), 한국법제연구원, 2002. 376면이하 참조.

33) 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하), 1712면.

第53條 (執行의 不停止) 抗告와 再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1) 53조를 결정은 집행은 항고와 재항고로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도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

第54條 (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이 終決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과 決定書를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표제어는 ‘종결된 사건기록등을 보냄’이라고 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송부는 ‘보낸다’라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 한자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第55條 (刑事訴訟法の 準用) 이 후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の 規定을 準用한다.

1) 제55조의 표제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2) 문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장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

第56條 (賠償申請)

①被害者는 家庭保護事件이 繫屬된 第1審 法院에 第57條의 賠償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要하지 아니한다.

②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26條第2項 내지 第8項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1항의 ‘계속’은 음독이 대단히 어려운 한자어이다. 물론 법령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만 일상적으로는 오히려 ‘연속’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은 ‘연속’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첨부’는 무엇을 발라서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인지를 첨부하다.’는 ‘인지를 발라서 붙인다.’는 의미인데 요사이에는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문서에서도 인지는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순화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이라 할 것이다. 첨부란 한자어는 결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2항의 경우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26條第2項 내지 第8項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57條 (賠償命令)

①法院은 第1審의 家庭保護事件 審理節次에서 保護處分을 宣告할 경우 職權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金錢支給이나 賠償(이하 “賠償”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扶養에 필요한 金錢의 支給

2. 家庭保護事件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에 있어서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합의된 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명할 수 있다.

③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25條第3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1)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는 ‘직권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2) 1호에서 ‘금전의 지급’은 ‘금전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본다.

3) 2호에서 ‘家庭保護事件으로 인하여 발생한’은 문장구조를 번역투에서 개선하여 ‘가정보호사건 때문에 발생한’ 혹은 ‘발생한’ 역시 순화하여 ‘생긴’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2항의 경우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개선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문장이다.

第58條 (賠償命令의 宣告)

- ①賠償命令은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賠償命令은 일정액의 金錢支給을 명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대상과 金額을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 ⑤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을 行爲者 및 被害者에게 지체없이 送達하여야 한다.

1)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를 빼고 ‘배상명령을 선고’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2)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시제를 바꾸어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가집행’은 ‘임시집행’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³⁴⁾

4) ‘송달’은 ‘보낸다’고 순화하면 될 것이다.

34) 법령용어사례집(상), 34면 참조.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59條 (申請의 却下)

- ① 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그 申請이 이유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尙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 ②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할 수 있다.
- ③ 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일부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1) 관형격조사를 없애고 ‘신청을 각하’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인 표현이다.

2) 1항은 시제를 ‘不適法한 때’에서 ‘부적법할 때’라고 하여 뒤와 시제를 맞추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본다.

3) 또는 그 申請이 이유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尙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4)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에서 ‘인용한 재판은 신청인이...’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조사만 바꾸어도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第60條 (不服)

- ① 保護處分에 대한 抗告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家庭保護事件과 함께 抗告審에 移審된다. 保護處分에 대한 再抗告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抗告審에서 第1審 決定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變更할 수 있다.
- ③ 行爲者는 保護處分決定에 대하여 抗告를 제기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는 7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의 棄却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7日 이내에 再抗告할 수 있다.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決定에 대하여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再抗告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第1項, 第3項 및 第4項에 의한 抗告와 再抗告는 賠償命令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1) 1항에서 ‘保護處分에 대한 抗告提起가 있는 때에는’은 문장구조를 시제를 바꾸고 조사를 바꾸어 어색하지 않은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에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2) ‘이심’은 ‘ 옮겨서 심리한다’라고 풀어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 ‘保護處분에 대한 再抗告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보호처분을 재항고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4) 3항의 경우 문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여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행위자가 보호처분결정을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만을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간결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5) 4항은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라 할 것이다.

6)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決定에 대하여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再抗告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개선하여 ‘제1항의 전단에 따른 항고결정에서 배상명령만을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61條 (賠償命令의 效力과 強制執行)

①확정된 賠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 있는 賠償命令이 기재된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強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 있는 民事判決 正本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 <개정 2002.1.26>

②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확정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의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 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1) 1항에서 ‘正本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強制執行에 관하여는’라는 번역투의 문장을 개선하여 ‘본장은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강제집행에서...’라고 개선하면 될 것이고 문장도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2) 2항은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이 법에 따라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는 ‘다른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의 한자어 문장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第62條 (다른 法律의 準用) 이 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訴訟進등에 관한 特例法과 民事訴訟法의 관련 規定을 準用한다.

1) 제62조의 경우에 문어체적인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간결하고 일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第63條 (保護處分의 不履行罪) 第4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行爲者는 2年 이하의 懲役이나 2千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1) 본조의 경우에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에 의한 보호처분’은 ‘1항에서 규정된 보호처분’이라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第64條 (秘密嚴守等 義務의 違反罪)

①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補助人(辯護士를 제외한다), 相談所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1年 이하 懲役이나 2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8條第2項의 報道禁止義務를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發行人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 기타 出版物의 著作者와 發行人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비밀엄수등 의무를 위반한 죄’라고 표제어의 조사를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2) 1항에서 ‘...의 규정에 의한’은 ‘...에서 규정된 혹은 규정에 따른’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어색하지 않은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3) 2항에서 ‘從事者 기타 出版物의 著作者와 發行人은’은 ‘일하는 사람 그 이외에 출판물의 저작...’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호에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환에 불응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에 의한’이라는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2) 3호에서 ‘소환’은 ‘부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번역투의 관행을 버리고 ‘규정에 따라서’ 혹은 ‘규정된’으로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고 법령의 간결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는 말

종래 경제규모가 매우 빈약한 시절에 경제범죄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규모 또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경제범죄는 사회의 중대한 위협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법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개선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경제범죄가 현대사회에 중대한 범죄의 영역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개선하고 순화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문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문을 개선하는데는 우선한 것은 다른 법과의 통일성이나 용어의 통일성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로 개선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고 순화하고자 하였다.

2.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건전한 國民經濟倫理에 반하는 特定經濟犯罪에 대한 加重處罰과 그 犯罪行爲者에 대한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1)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는 문어체 문장을 개선하여 ‘취업 제한등을 규정하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적인 문장구조이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8.1.13, 2001.3.28, 2002.12.5, 2004.12.31>
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가. 韓國銀行, 金融監督院 및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
 나. 삭제 <1998.1.13>
 다.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조합과 그 中央會
 바.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조합과 그 中央會
 사. 삭제 <2002.12.5>
 아.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과 그 중앙회
 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聯合會
 차.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카.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타.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
 파.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하.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
 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너. 그 밖에 가목 내지 거목의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貯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金融機關에 預入·納入 또는 信託하거나 金融機關으로부터 受領 또는 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가. 預金·積金·賦金·계금 및 信託財産
 나. 株式·債券·受益證券·어음·手票 및 債務證書
 다. 保險料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貸出등”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취급하는 貸出,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 給付, 債券 또는 어음의 割引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조 제1호는 ‘...라 함은’은 ‘금융기관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이다.

2) 가목은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을 개선하여 ‘그 이외 법률에서 규정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목부터 거목까지 ‘...에 의한’은 번역투의 문장으로 ‘...에 규정 한’ 혹은 ‘...에 따른’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구조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4) 너목에서 ‘기타’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밖에’라고 한 것을 보면 이처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예입’은 ‘금품을 맡겨 두거나 기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납입’은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입’은 ‘예탁’으로 ‘납입’은 ‘납부’라고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저축이라 함은’은 ‘저축이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이다.

7) 라목은 ‘기타 가目 내지 다目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순화하여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3條 (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 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利得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삭제 <1990.12.31>

②第1項의 경우 利得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1) 제3조의 표제어를 ‘특정재산범죄를 가중처벌’이라고 하여 관형격 조사를 남발하는 관행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항에서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그 범죄행위 때문에’라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3) ‘취득’은 ‘얻는다’라고 순화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가중처벌한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 4 條 (財産國外逃避의 罪)

①法令에 違反하여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하여야 할 財産을 國外에서 隱匿 또는 處分하여 逃避시킨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逃避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逃避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 미만인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삭제 <1990.12.31>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未遂犯은 各 本罪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④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第1項에 規定된 罰金을 科한다.

1) 1항에서 ‘반입’을 ‘들여와’라고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隱匿’은 몰래 감추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은닉’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그 의미를 풀어 ‘숨기거나 혹은 감추거나’로 하면 될 것이다.

3) ‘당해’는 ‘해당’이라고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4) ‘기타 종업원’은 ‘그 밖에 종업원’이라고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5)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이는 ‘내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일상적인 ‘부터’로 바꾸고 ‘한 때에는’이란 시제를 바로잡아 올바른 문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된 행위를 할 때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 5 條 (收財등의 罪)

①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三者에게 金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

③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所屬金融機關 또는 다른 金融機關의 任·職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斡旋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金品 기타 利益의 價額(이하 “收受額”이라 한다)이 1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收受額이 5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收受額이 1千萬원 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수재’는 재산등을 받은 것을 말하는 한자어이다. 이는 법령의 표제어라 그대로 두는 것도 좋다.

2) 1항의 경우 불필요한 한자어를 없애고 한글화하거나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색한 문장을 개선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요구’라고 순화하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3) ‘공여’는 ‘제공하다’ 혹은 ‘주다’라고 순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4) ‘알선’은 ‘주선’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이익’은 ‘그 밖에 이익’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6) 4항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다음과 같이 ‘구분’ 혹은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장이 되어 어색하지 않고 번역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第 6 條 (贈財등의 罪)

- ①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品 기타 利益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第1項의 行爲에 제공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받은 者は 第1項의 刑과 같다.

1) 1항에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品 기타 利益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품 그 밖에 이익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어색하지 않는 문장이 될 것이다.

2) ‘그 정을 알면서’는 ‘그 사정을 알면서’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가 아닌 문장구조이다.

第 7 條 (斡旋收財의 罪) 金融機關의 任·職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斡旋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 또는 約束한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알선’은 ‘주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2) ‘공여’는 ‘주거나 혹은 제공’이라고 개선하거나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 8 條 (私金融斡旋등의 罪)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자기의 利益 또는 所屬金融機關외의 第3者の 利益을 위하여 자기의 計算 또는 所屬金融機關외의 第3者の 計算으로 金錢의 貸付,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를 하거나 이를 斡旋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알선’은 ‘주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2) ‘대부’는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장속에서 ‘대부’라는 한 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第9條 (貯蓄關聯不當行爲의 罪)

- ①貯蓄을 하는 者 또는 貯蓄을 仲介하는 者가 金融機關의 任·職員으로부터 당해 貯蓄에 관하여 法令 또는 約款 기타 이에 준하는 金融機關의 規程에 의하여 정하여진 利子·福金·保險金·配當金·報酬외에 名目여하를 불문하고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貯蓄을 하는 者가 당해 貯蓄과 관련하여 당해 貯蓄을 仲介하는 者 또는 당해 貯蓄과 관계없는 第3者에게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등을 받게 한 때 또는 貯蓄을 仲介하는 者가 당해 貯蓄과 관련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등을 받거나 당해 貯蓄과 관계없는 第3者에게 貸出등을 받게 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
- ③金融機關의 任·職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된 金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거나 貸出등을 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刑과 같다.
- ④第1項·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 ⑤金融機關의 任·職員이 所屬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所屬金融機關에 대하여도 第3項에 規定된 罰金을 科한다.

- 1) 1항의 ‘당해저축에 관하여’는 ‘해당 저축에 관련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구조이다.
- 2)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이라고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공여’는 ‘주거나 혹은 제공’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업무에 관하여’는 ‘업무와 관련하여’라고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10條 (沒收·追徵)

- ①第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犯人이 逃避시키거나 逃避시키려고 한 財産은 이를 沒收한다.
- ②第5條·第6條·第7條 및 第9條第1項·第3項의 경우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3者가 받은 金品 기타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1항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는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이익’은 ‘그 밖에 이익은....’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3항의 경우에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은 현재형 시제를 바꾸어 어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아 이해하기 쉽다.

第11條 (無認可短期金融業의 加重處罰)

①綜合金融會社에 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의2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는 그 營業으로 인하여 取得한 利子·割引 및 收入料 기타 手數料의 金額(이하 “手數料額”이라 한다)이 年1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8.1.13>

1. 手數料額이 年 10億원 이상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2. 手數料額이 年 1億원 이상 10億원미만인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取得한 手數料額의 100분의 10 이상 手數料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

1) 표제어는 ‘무인단기금융업을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2) ‘그 영업으로 인하여’라는 번역투의 문장을 개선하여 ‘그 영업으로부터’라고 하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개선된 문장이 될 것이다.

第12條 (報告義務等)

①金融機關의 任·職員은 그의 監督을 받는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情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所屬金融機關의 長이나 監査 또는 檢査의 職務를 담당하는 部署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의 長이나 監査 또는 檢査의 職務에 종사하는 任·職員 또는 監督機關의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情을 안 때에는 지

제없이 이를 搜查機關에 告知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は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정당한 事由없이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は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第3項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한 者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機關 및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の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1) ‘그 직무에 관하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하여 우리 어법에 맞게 문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정을 안 때에는’은 번역투의 문장으로 ‘사정을 안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그리고 ‘사정을 알 때’라고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の 범위는’에서 ‘종사는 감독업무를 하는’ 혹은 ‘감독업무를 일을 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순화된 문장구조라 생각된다.

第13條 (經濟事犯管理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法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經濟事犯管理委員會를 둔다.
 1. 第14條第1項 但書 및 同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에 관한 事項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에 관한 事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濟事犯管理에 관한 事項
 ②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2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제14조의 경우에도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면 기존의 방법으로 개선하면 될 것이다.

VI. 결 론

형사특별법은 형사기본법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 이를 모두 순화하고 개선하는데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난번 연구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학문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만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 어법에도 맞는 완전한 문장구조를 가진 법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형사특별법분야 기본형법전과 연계하여 통일적인 연구를 지속할 필요성은 숙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중에 만들어진 우리 형법은 그 후 기본형법전의 몇배가 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법들은 대부분 외국의 입법례를 모방하거나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형법전을 만들고자 했던 선인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한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구조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혹자는 이러한 연구에 대하여 이미 수십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되어온 용어나 문장구조를 지금에 와서 개선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를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법을 일부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시민이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이어 형사특별법 분야에 대한 문장구조의 개선과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작업을 계속하였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자료는 너무도 빈약하고 그나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리적인 것을 고려한 입장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 많아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문의 통일성이나

VI. 결 론

법리적 혹은 문법적인 정확성보다는 일상적인 어법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번역투의 문장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외국의 입법을 계수하여 올 것이다. 우리가 비록 외국의 법을 계수하여 와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법을 실제로 지켜야하는 일반국민들이 쉽게 그 법령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게, 쉽고 일상적인 용어와 문장구조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의 법률서비스비용도 줄일 수 있고, 특히 형사법분야의 법문은 쉽게 쓰여질수록 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자인 국민들이 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규범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법이 쉽게 이해된다면 국민들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 또한 높아져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가는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고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 입법들을 보면 그래도 과거처럼 외국의 법령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고 있다. 그러나 법학과 다른 학문분야가 연계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나 입법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법령을 순화하고 문장을 개선하는 기구를 상설하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법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때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령의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의 출연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다른 학문분야와 연계된 입법학의 개설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를 지속하는 기구가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부록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김성천,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2005.
- 김정수,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4.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2.
- 손동권, 형법각론, 을곡출판사, 2005.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6.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임 용, 형법총론, 법문사, 2006.
- 임 용, 형법각론, 법문사, 2006.
- 전학선의,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고 문헌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4.
- 이훈동/이주일, 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이훈동/이주일 공저, 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단, 한·일 법령용어비교해설집, 2005, 상, 하,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논문 및 기타자료 >>

-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국회법제실,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국회 법제실, 2004.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제2집, 상,하, 법제처, 2003.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법제처, 1996.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공편, 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한국법제연구원, 法令用語에 관한 研究 : 用語整備를 위한 基礎理論,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고영신, 법률용어 바로쓰기, 사법연수25, 2000.10.
- 신각철,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95.6, 국립국어연구원, 1995

- 신근호, 법령순화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련사례 연구, 법제 통권 제423호, 법제처, 1993.9.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이상희, 법률 한글화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글사랑 14, 2000.8.
- 정완/윤동호/김정태 공저, 형사법령용어의 순화(醇化)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부 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개정안
<p>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법무부</p> <p>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家庭暴力犯罪의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u>者に 대하여</u>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u>行함으로써</u>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u>인권을 보호함</u>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18></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家庭暴力</u>”이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産上 被害를 수반하는 行爲를 말한다. 2. “<u>家庭構成員</u>”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配偶者(事實上 婚姻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配偶者관계에 있었던 者 나. 自己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關係(事實上의 養親子關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者 다. 繼父母와 子의 關係 또는 嫡母와 庶子의 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者 라. 同居하는 親族관계에 있는 者 3. “<u>家庭暴力犯罪</u>”라 함은 家庭暴力으로서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p>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법무부</p> <p>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u>자에게</u>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보호처분을 하여)을 <u>행하여</u>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u>보호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정폭력</u>”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u>가정폭력범죄</u>”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카. 가目 내지 자目的 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p> <p>4.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 犯罪를 犯한 者 및 家庭構成員인 共犯(이하 “行爲者”라 한다)을 말한다.</p> <p>5.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直接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p> <p>6. “家庭保護事件”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대상이 되는 事件을 말한다.</p> <p>7. “保護處分”이라 함은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審理를 거쳐 行爲者에게 科하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말한다.</p> <p>8. “兒童”이라 함은 兒童福祉法 第2條 第1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p> <p>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 適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家庭保護事件 第1節 通則</p> <p>第4條 (申告義務 등)</p> <p>①누구든지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搜查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p> <p>1. 兒童의 教育과 保護를 擔當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p> <p>2. 兒童, 60歲 이상의 老人 기타 正當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 등을 擔當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p> <p>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礙人福祉法에 따른 障礙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p>	<p>카. 가목부터 자목범죄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죄</p> <p>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p> <p>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때문에 直接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p> <p>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때문에 이 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p> <p>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科하는 제40조에 규정된(규정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p> <p>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p> <p>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는 이 法을 우선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章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p> <p>제4조 (신고의무 등)</p> <p>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正當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아동의 教育과 保護를 擔當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자와 그 長</p> <p>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正當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에게 치료 등을 擔當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長</p> <p>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長</p>

현 행	개 정 안
<p>②被害者は 刑事訴訟法 第2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行爲者가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인 경우에도 告訴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이 告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被害者에게 告訴할 法定代理人이나 親族이 없는 경우에 利害關係人의 신청이 있으면 檢事는 10日 이내 到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p> <p>第 7 條 (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司法警察官은 家庭暴力犯罪를 신속히 搜查하여 事件을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은 당해 사건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 8 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p> <p>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第 9 條 (家庭保護事件의 處理)</p> <p>①檢事는 家庭暴力犯罪로서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등을</p>	<p>②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 7 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넘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 8 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p> <p>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법원에 제 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서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 9 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p> <p>①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p>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庭	고려하여 이 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처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p>③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에 따른 家庭暴力 관련 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 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에 따른 性暴力 被害 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u>相談所</u>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 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暴力 犯罪를 申告한 자(이하 “<u>申告者</u>”라 한다)에 대하여 그 申告行爲를 이유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u>상담소</u>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u>신고자</u>”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第5條 (家庭暴力 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家庭暴力 犯罪에 대하여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 吏는 즉시 <u>現場에 입하여</u> 다음 각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12.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력행위의 제지, <u>행위자·피해자</u>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被害者의 家庭暴力 관련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 <u>引渡</u>(<u>被害者의 同意</u>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被害者의 醫療機關 <u>引渡</u> 4. 暴力行爲의 재발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를 申請할 수 있음을 통보 	<p>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u>즉시 현장에 가서</u>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12.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력행위의 제지, <u>행위자·피해자</u>를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u>보냄</u>(<u>피해자</u>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u>피해자</u>를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u>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u>을 통보(<u>규정한</u>)
<p>第6條 (告訴에 관한 特例)</p> <p>①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를 告訴할 수 있다.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行爲者인 경우 또는 行爲者와 공동하여 家庭暴力 犯罪를 <u>犯한 경우에는</u> 는 被害者의 親族이 告訴할 수 있다.</p>	<p>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p> <p>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u>범한 때에는</u> 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被害者の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p>第10條 (管轄)</p> <p>①家庭保護事件의 管轄은 行爲者의 行爲地·居住地 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으로 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해당地域의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p> <p>②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決定은 單獨 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p> <p>第11條 (檢事의 送致)</p> <p>①檢事는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을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送致하여야 한다.</p> <p>②檢事는 家庭暴力犯罪와 그 外의 犯罪가 競合하는 때에는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事件만을 분리하여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p> <p>第12條 (法院의 送致) 法院은 行爲者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이 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의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被害者の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p>	<p>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p>제10조 (관할)</p> <p>①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p> <p>②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p> <p>제11조 (검사가 넘겨줌)</p> <p>①검사는 <u>제9조에서 규정한</u>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u>넘겨주어야 한다.</u></p> <p>②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u>그 외의 범죄가 경합할 때에는</u>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u>법원에 넘길 수 있다.</u></p> <p>제12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u>행위자를 피고인으로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u>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第13條 (送致時의 身柄處理)</p> <p>①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送致決定이 있는 경우 行爲者를 拘禁하고 있는 시설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 法院이 있는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에서는 24時間 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 이내에 行爲者를 管轄 法院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行爲者에 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刑事訴訟法 第92條, 第203條 또는 第205條의 拘束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③拘束令狀의 效力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p>	<p>제13조 (송치시의 신체처리)</p> <p>①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規定에 따라서 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行爲者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檢事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規定에 따라 管轄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외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行爲者를 管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行爲者에게 제29조의 規定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③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規定에 따라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p>
<p>第14條 (送致書)</p> <p>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를 보내야 한다.</p> <p>②第1項의 送致書에는 行爲者의 姓名·住所·生年月日·職業·被害者와의 관계 및 行爲의 개요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p>	<p>제14조 (송치서)</p> <p>①제11조 및 제12조의 規定에 따라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줄 때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p> <p>②제1항의 송치서에는 行爲者의 이름·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行爲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그 외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第15條 (移送)</p> <p>①家庭保護事件을 送致받은 法院은 事件이 그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適正한 調査·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事件을 즉시 다른 管轄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p> <p>②法院은 第1項 規定에 의한 移送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添附하여 行爲者와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제15조 (이송)</p> <p>①가정보호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사건을 즉시 다른 管轄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은 제1항 規定에 따라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덧붙여서 行爲者와 피해자 및 檢事에게 알려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第16條 (保護處分の效力)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確定된 때에는 그 行爲者에 대하여 同一한 犯罪事實로 다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넘겨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17條 (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送致된 때로부터 時效進行이 停止되고 그 事件에 대한 第37條第1項의 不處分の 決定(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確定된 때 또는 第27條 第2項·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 共犯의 1인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 대하여 效力을 미친다.</p>	<p>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넘겨진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송치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을 미친다.</p>
<p>第18條 (秘密嚴守등의 義務) ① 家庭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 및 그 執行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 補助人 또는 相談所등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 및 第4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者(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② 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行爲者, 被害者, 告訴人·告發人 또는 申告人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p>	<p>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게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서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이름·연령·직업·생김새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자는 正當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이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p>

현행	개정안
<p>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2節 調査・審理</p> <p>第19條 (調査・審理의 方向)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는 醫學・心理學・社會學・社會福祉學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行爲者・被害者 기타 家庭構成員의 性行・經歷・家庭狀況과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을 밝혀서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處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20條 (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위하여 法院에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調査官의 資格・任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p> <p>第21條 (調査命令) 判事는 調査官에게 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의 審問이나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p> <p>第22條 (專門家の 意見照會) ①法院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學者・社會福祉學者 기타 관련 專門家에게 行爲者・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精神・心理狀態에 대한 診斷所見 및 家庭暴力犯罪의 原因에 관한 의견을 照會할 수 있다.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結果를 참작하여야 한다.</p> <p>第23條 (陳述拒否權의 告知) 判事 또는 調査官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할 때에 미리 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알게 해서는 아니된다.</p> <p>제2절 조사·심리</p> <p>제19조 (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그 외의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관의 자격·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 (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등을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22조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물어 볼 수 있다.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p> <p>제23조 (진술거부권을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第24條 (召喚 및 同行令狀) ① 判事는 調査·審理에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行爲者·被害者·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u> ② 判事는 行爲者가 <u>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u></p> <p>第25條 (緊急同行令狀) 判事는 行爲者가 召喚에 <u>응하지</u>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u>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u></p> <p>第26條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行爲者의 姓名·生年月日·住居, 行爲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執行에 착수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判事가 署名·捺印 하여야 한다.</p> <p>第27條 (同行令狀의 執行등) ① 同行令狀은 調査官이나 法院의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이하 “法院公務員”이라 한다) 또는 <u>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u> ② 法院은 行爲者의 所在不明으로 인하여 1年 이상 同行令狀을 執行하지 못한 경우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u>送致할 수 있다.</u> ③ 法院은 <u>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u> 그 사실을 즉시 行爲者의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에게 <u>通知하여야 한다.</u></p> <p>第28條 (補助人) ① 行爲者는 자신의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p>	<p>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날짜를 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불러들일 수 있다.</u> ② 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p> <p>제25조 (긴급동행영장)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u>따르지</u>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u>인정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러들임 없이</u>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p> <p>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u>이름·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데려오거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도장찍고 하여야 한다.</u></p> <p>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등)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u>사법경찰관에게</u>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u>행위자가 소재불명이어서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u>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u>넘겨줄 수 있다.</u>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u>집행할 때에는</u>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u>알려야 한다.</u></p> <p>제28조 (보조인) ① 행위자는 <u>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서</u>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p> <p>④法院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行爲者의 補助人이 있는 경우에는 補助人에게, 補助人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行爲者가 지정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行爲者에게 辯護士등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으며 第49條第1項의 抗告를 제기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p> <p>⑤第1項第1號·第2號의 隔離 및 接近 禁止期間은 2月, 同項第3號·第4號의 委託 및 留置期間은 1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그 期間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각 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u></p> <p>⑥第1項第3號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行爲者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p> <p>⑦民間이 운영하는 醫療機關등에 대하여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미리 告知하고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⑧判事는 第1項 各號에 규정된 臨時措置의 決定을 한 때에는 調査官, 法院 公務員, 司法警察官吏 또는 拘置所 소속 矯正職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⑨行爲者, 그 法定代理人이나 補助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決定의 取消 또는 그 종류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p> <p>⑩判事는 職權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p>	<p>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p> <p>④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에게 보조인있으면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제1호·제2호의 격리 및 접근 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제4호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u>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결정으로 각기간의 범위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u></p> <p>⑥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p> <p>⑦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⑧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⑨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을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⑩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p>

<p>하는 때에는 <u>법정으로 당해</u> 臨時措置를 取消하거나 그 종류를 變更할 수 있다.</p>	<p><u>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u>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辯護士, 行爲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형제자매, 相談所등의 相談員과 그 長은 補助人이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者를 補助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p>	<p>②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辯護士가 아닌 補助人은 金品·饗應 기타 利益을 받거나 받을 것을 約束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2항에서 규정한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u>그 밖에</u>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u>제공하게 하거나</u> <u>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④法院은 行爲者가 刑事訴訟法 第33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辯護士를 行爲者의 補助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p>	<p>④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u>해당할 때에는</u>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補助人에게 지급하는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費用등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 <개정 1999.12.31></p>	<p>⑤제4항의 <u>규정에 따라서</u>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u>비용은</u>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31></p>
<p>第29條 (臨時措置)</p>	<p>제29조 (임시조치)</p>
<p>①判사는 家庭保護事件의 원활한 調査·審理 또는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行爲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p>	<p>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될 때에는</u>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p>
<p>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住居 또는 占有하는 <u>房室로부터의 退去</u>등 隔離 2. 被害者의 住居, 職場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u>接近禁止</u> 3.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의 委託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u>구치소에서의 유치</u></p>	<p>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u>방실로부터</u> 퇴거등 격리 2. <u>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u> 3. 의료기관 <u>그 밖에 요양소에 맡김.</u>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u>구치소에 들</u></p>
<p>②同行令狀에 의하여 同行된 行爲者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行爲者에 대하여는 行爲者가 法院에 引致된 때로부터 24時間 이내에 第1項의 措置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p>	<p>②동행영장에 <u>따라</u>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u>따라서 인도된 행위자에게는</u>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申請人の 陳述로 인하여 審理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에 관한 意見を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法院은 審理에 있어서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被害者 또는 調査官에게 意見を 陳述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는 公正한 意見陳述등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行爲者の 退場을 命할 수 있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被害者는 辯護士,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형제자매, 相談所 등의 相談員 또는 <u>그 長으로 하여금</u> 대리하여 意見を 陳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인이 召喚을 받고도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p> <p>第34條 (證人訊問·鑑定·通譯·翻譯)</p> <p>①法院은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을 命하며 通譯 또는 翻譯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과 鑑定·通譯 및 翻譯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③證人·鑑定人·通譯人·翻譯人에게 지급하는 費用·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 및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개정 1999.12.31></p> <p>第36條 (協調·援助)</p> <p>①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한 경우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p>	<p>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p> <p>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를 신문할 때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公正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에게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p>제34조 (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p> <p>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그 밖에 비용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p> <p>제36조 (협조·원조)</p> <p>①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p>

<p>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에 대하여 協 調와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p>	<p>또는 의료기관 <u>그 밖에 단체에게</u> 협조 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⑪第1項第3號의 委託의 대상이 되는 醫療機關 및 療養所의 基準 기타 필요 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p>	<p>⑪제1항제3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u>그 외에</u> <u>필요</u>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第30條 (審理期日의 指定) ①判事は 審理期日을 指定하고 行爲者 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家庭保護事件의 要旨 및 補助人을 選 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 야 한다. ②第1項의 審理期日은 補助人과 被害 者에게 <u>通知하여야 한다.</u></p>	<p>제30조 (심리기일을 지정) ①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 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 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 자에게 <u>알려주어야 한다.</u></p>
<p>第31條 (審理期日의 變更) 判事は 職權 또는 行爲者나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 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이 경 우 變更된 期日을 行爲者·被害者 및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제31조 (심리기일을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u>보조인이 청구하면</u> 심 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 경된 기일을 행위자·피해자 및 보조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第32條 (審理의 非公開) ①判事は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함에 있 어서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 定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善良한 風俗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證人으로 召喚된 被害者 또는 家庭構 成員은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 定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u>判事에 대하여</u> <u>證人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u> 이 경우 判事は 그 許可여부와 公開法廷의 의 <u>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訊問의 방식</u>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p>	<p>제32조 (심리를 비공개)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u>심리하면서</u> <u>(심리할 때에)</u>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 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 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 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u>판사에게</u> 증 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의 의 <u>장소에서</u> 신문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p>
<p>第33條 (被害者の 陳述權등) ①法院은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申請人이 이미 審理節次에서 충분 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①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 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 다고 <u>인정될 때</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第3節 保護處分</p> <p>第40條 (保護處分の決定等)</p> <p>①判事は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行爲者가 被害者에게 接近하는 行爲의 제한 2. 親權者인 行爲者의 被害者에 대한 親權行使의 제한 3.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에 의한 社會奉仕・受講命令 4.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에 의한 保護觀察 5.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保護施設에의 監護委託 6. 醫療機關에의 治療委託 7. 相談所등에의 相談委託 <p>②第1項 各號의 處分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p> <p>③第1項第2號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被害者를 다른 親權者나 親族 또는 適當한 施設로 引渡할 수 있다.</p> <p>④法院은 保護處分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檢査, 行爲者,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保護處分을 委託받아 行하는 保護施設, 醫療機關 또는 相談所등(이하 “受託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機關이 民間에 의하여 운영되는 機關인 경우에는 그 機關의 長으로부터 受託에 대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⑤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行爲者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보호처분</p> <p>제40조 (보호처분을 결정등)</p> <p>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친권 행사를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 치료부탁 7. 상담소등에 상담부탁 <p>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③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p> <p>④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수탁기관이면 그 기관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⑤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p>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p>資料를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p>	<p>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拒否할 때에는 正當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에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正當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p>
<p>第37條 (不處分の 決定)</p> <p>①判事は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處分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5.1.27> 2.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習癖등에 비추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p>②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12.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行爲者,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제37조 (불처분을 결정)</p> <p>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5.1.27>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버릇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p>②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12.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할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第38條 (處分の 期間등)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處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處分の 決定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送致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移送받은 경우에는 移送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38조 (처분의 기간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第39條 (委任規定)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p>	<p>제39조 (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護處分期間은 1年을,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期間은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③第1項의 處分變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검사, 행위자, 法定代理人, 補助人,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受託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p> <p>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p>第47條 (保護處分の 終了) 法院은 行爲者의 性行이 矯正되어 정상적인 家庭生活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保護處分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護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終了할 수 있다.<개정 2002.12.18></p> <p>第48條 (費用의 負擔)</p> <p>①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決定 또는 第40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는 委託 또는 保護處分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한</p>	<p>분기간은 1년을,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p> <p>제46조 (보호처분을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부터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p>제47조 (보호처분을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개정 2002.12.18></p> <p>제48조 (비용의 부담)</p> <p>①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p>

<p>다. 다만, 行爲者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가 이를 負擔할 수 있다.</p>	<p>다. 다만, 行爲者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가 이를 負擔할 수 있다.</p>
<p>第41條 (保護處分の 期間)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の 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으며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은 1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第42條 (沒收) 判事は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 決定으로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件으로서 行爲者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p>	<p>제42조 (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에서 행위자의 자가 소유가 아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p>
<p>第43條 (保護處分決定의 執行) ①法院은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保護處分の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保護處分の 執行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 및 精神保健法을 準用한다. 第44條 (報告와 意見提出등) 法院은 第40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 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제43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에게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44조 (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3호 부터 제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第45條 (保護處分の 變更) ①法院은 保護處分이 進行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請求에 따라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保護處分の 種類와 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の 種類와 期間을 變更하는 경우 종전의 處分期間을 합산하여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p>	<p>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번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더하여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p>

현 행	개 정 안
<p>第51條 (抗告의 裁判)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에 違反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다른 管轄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還送 또는 移送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破棄하고 스스로 상당한 臨時措置, 不處分 또는 保護處分의 決定을 할 수 있다.</p> <p>第52條 (再抗告) ①抗告의 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法令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이를 準用한다.</p> <p>第53條 (執行의 不停止) 抗告와 再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中止하는 효력이 없다.</p> <p>第54條 (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이 終決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과 決定書를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p> <p>第55條 (刑事訴訟法의 準用) 이 章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罰 則</p> <p>第63條 (保護處分의 不履行罪) 第4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p>	<p>제51조 (항고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52조 (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3조 (집행을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p> <p>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등을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55조 (형사소송법을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벌 칙</p> <p>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p>

<p>니한 行爲者는 2年 이하의 懲役이나 2千 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p>	<p>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p>
<p>② 判事는 行爲者에 대하여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爲者가 負擔할 費用의 計算, 請求 및 支給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p>	<p>② 판사는 <u>행위자에게</u>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u>규정에 따라서</u>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第 4 節 抗告와 再抗告</p>	<p>제 4 절 항고와 재항고</p>
<p>第49條 (抗告)</p>	<p>제49조 (항고)</p>
<p>① 第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延長 또는 變更의 決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第40條의 保護處分, 第45條의 保護處分의 變更 및 第46條의 保護處分의 取消에 있어서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은 家庭法院本院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 法院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處分의 決定을 한 경우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法院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18> ③ 抗告의 제기기간은 그 決定을 告知 받은 날부터 7日로 한다.</p>	<p>① 제8조 또는 <u>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u>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 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 법원이 제37조의 <u>규정에 따라서</u> 불 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③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p>
<p>第50條 (抗告狀의 제출)</p>	<p>제50조 (항고장의 제출)</p>
<p>① 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抗告狀을 제출받은 法院은 3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기록을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①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 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 부 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개정안
<p>第64條 (秘密嚴守等 義務의 違反罪)</p> <p>①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補助人(辯護士를 제외한다), 相談所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그 직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1年 이하 懲役이나 2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第18條第2項의 報道禁止義務를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發行人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 기타 出版物의 著作者和 發行人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자 	<p>제64조 (비밀엄수등 의무를 위반죄)</p> <p>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부 록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p> <p>第1條 (目的) 이 법은 不正食品 및 添加物, 不正醫藥品 및 化粧品, 不正有毒物의 製造나 無免許 醫療行爲등의 犯罪에 대하여 加重處罰등을 行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0.12.31></p> <p>第2條 (不正食品製造등의 處罰)</p> <p>①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加工한 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類似하게 偽造 또는 變造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 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規定에 違反하여 製造加工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개정 1980.12.31, 1986.5.10, 1990.12.31, 2002.8.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人體에 顯著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5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p> <p>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만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를 가중처벌등을 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p> <p>제2조 (부정식품제조등을 처벌)</p> <p>①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만들거나·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사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주선한 자,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벌한다. <개정 1980.12.31, 1986.5.10, 1990.12.31, 2002.8.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人體에 현저히 해로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p>3. 第1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加工·偽造·變造·取得·販賣 또는 販賣 <u>알선한</u>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 이상 5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を 併科한다.<개정 1990.12.31></p> <p>第3條 (不正醫藥品 製造등의 處罰)</p> <p>①藥事法 第26條第1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醫藥品 또는 化粧品을 製造한 者, 그 情을 알고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 同法 第56條第2號에 違反하여 主된 成分의 效能을 전혀 다른 成分의 效能으로 代替하거나 許可된 含量보다 顯著히 不足하게 製造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 이미 許可된 醫藥品 또는 化粧品과 유사하게 偽造 또는 變造한 者, 그 情을 알고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p> <p><개정 1980.12.31, 1990.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醫藥品 또는 化粧品이 人體에 顯저히 有害한 때 또는 藥事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檢定醫藥品중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醫藥品으로서 效能 또는 含量이 顯著히 不足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醫藥品 또는 化粧品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第1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p>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는 <u>만들</u>·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 <u>주선한</u>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p> <p>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등을 처벌)</p> <p>①약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化粧품을 <u>만든</u> 사람, 그 <u>사정을 알고</u>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동법 제56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u>주선한</u>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化粧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u>주선한</u>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벌한다.</p> <p><개정 1980.12.31, 1990.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 또는化粧품이 인체에 현저히 <u>해로울</u> 때 또는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 또는化粧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 행	개 정 안
<p>處한다. 이 경우에는 100萬원 이상 1千萬원 이하의 罰金を 併科한다.<개정 1986.5.10, 1990.12.31></p> <p>第 6 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的 代理人·使用人 <u>기타</u>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 <u>관하여</u> 第2條 내지 第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例에 따라 處罰한다.<개정 1990.12.31></p> <p>第 7 條 (許可의 取消)</p> <p>①이 <u>法の 規定에 의하여</u> 處罰을 받았거나, 그 製品이 規格基準에 違反하여 <u>人體에 有害</u>하거나, 效能 또는 含量이 顯著히 不足하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에서 檢定된 營業에 대하여는 <u>당해</u> 許可·免許 또는 登錄을 管轄하는 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의 要求에 따라 그 許可·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8.2.28> [개정규정시행일 1991.2.1]</p> <p>②第1項의 경우 이 法에 의하여 <u>營業의 取消</u>을 받은 者は <u>取消된 날로부터(處罰을 받은 者は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間</u> 당해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p> <p>第 8 條 (有害등의 基準) 第2條 내지 第4條 및 第7條중 “<u>현저한 有害</u>” 및 “<u>현저한 不足</u>”의 基準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p> <p>第 9 條 (賞金등)</p> <p>①이 法에 規定하는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監督廳에 通報한 者 또는 檢舉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p>	<p>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86.5.10, 1990.12.31></p> <p>제 6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u>그 이외</u>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u>관련하여</u>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0.12.31></p> <p>제 7 조 (허가를 취소)</p> <p>①이 <u>법에서 규정된</u>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u>사람 몸에 해롭거나</u>,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u>검정된 영업은 해당</u>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8.2.28> [개정규정시행일 1991.2.1]</p> <p>②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서 <u>영업이 취소된 자는</u> 취소된 날로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제 8 조 (유해등의 기준) 제2조부터 제4조 및 제7조중 “<u>매우 해로운</u>” 및 “<u>현저한 부족</u>”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p> <p>제 9 조 (상금등)</p> <p>①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u>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에서 규</u></p>

<p>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支給한다. ②他人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處罰</p>	<p>정하는 것에 따라서 賞金을 지급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이 법에 따라서 처벌</p>
<p>㉞第1項의 處罰을 받은 製造· 偽造 또는 變造</p>	<p>㉞제1항의 處罰을 받은 製造· 偽造 또는 變造</p>
<p>取得· 購入· 販賣 또는 販賣 알선한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 이상 5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개정 1990.12.31></p>	<p>취득· 구입· 판매 또는 판매 주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p>
<p>第3條의2 (再犯者의 特殊加重)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을 받은 후 3年 내에 다시 第2條第1項第1號 또는 第3條第1項第1號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p>	<p>제3조의2 (재범자를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第4條 (不正有毒物 製造등의 處罰)</p>	<p>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등을 처벌)</p>
<p>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 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서 규정한(규정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 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과 비슷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p>
<p>1.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殘留毒性이 人體에 현저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p>	<p>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잔류독성이 사람몸에 매우 해로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00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p>	<p>2.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 사용· 偽造 또는 變造한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 이상 5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第5條 (不正醫療業者의 處罰)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醫師가 아닌 者가 醫療行爲를, 齒科醫師가 아닌 者가 齒科醫療行爲를, 韓醫師가 아닌 者가 韓方醫療行爲를 業으로 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이상의 懲役에</p>	<p>제5조 (부정의료업자를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 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p>

현행	개정안
<p>偽로 情報를 제공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0條 (適用의 범위)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 酒稅法 第5條, 農藥管理法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造, 加工 또는 販賣에 관하여 許可, 免許 또는 登錄을 받아야 할 畜産物, 酒類 또는 有毒性 農藥은 각각 食品衛生法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法을 適用한다.</p>	<p>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10조 (적용 범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주세법 제5조, 농약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p>

《 부 록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 부록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p>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1호) 행정자치부</p> <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 <p>第1章 總 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u>알선하는 행위</u>,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 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u>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靑少年을 보호·救濟하여</u>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2005.12.29></p> <p>1. “靑少年”이라 함은 『靑少年보호법』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을 말한다.</p> <p>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거나 <u>청소년으로 하여금</u>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p>	<p>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1호) 행정자치부</p> <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 <p>第1章 總 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u>주선하는 행위</u>,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 <u>만들거나配布하는 행위</u> 및 <u>청소년을 성폭력행위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보호 구제하여</u>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2005.12.29></p> <p>1. “靑少年”이라 <u>란</u> 『靑少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u>규정한 靑少年</u>을 말한다.</p> <p>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u>란</u>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거나 <u>청소년에게</u>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p>

현 행	개 정 안
<p>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p> <p>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p> <p>第3條 (解釋·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權利가 不當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제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 4 조의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 4 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p> <p>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p> <p>第3條 (解釋·적용에 있어서 주의) 이 법을 解釋·적용할 때에는 國民의 權利가 不當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제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 4 조의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 4 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第2章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 <개정 2005.12.29></p> <p>第5條 (青少年的 性을 사는 行爲) 青少年的 性을 사는 行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6條 (青少年에 대한 強要行爲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的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2. 僞計 또는 先拂金 기타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青少年을 곤경에 빠뜨려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的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的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4. 營業으로 青少年을 青少年的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第2章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를 처벌 <개정 2005.12.29></p> <p>第5條 (青少年에게 性을 사는 行爲) 青少年에게 性을 사는 行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6條 (青少年에 대한 強要行爲등) ①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청소년에게 그 의 性을 파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2. 僞計 또는 先拂金 그 밖에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青少年을 곤경에 빠뜨려 青少年으로 하여금 青少年的 성을 파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3. 業務·雇傭 그 밖에 관계로부터 자신이 보호 또는 監督하는 것을 이용하여 青少年에게 性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 相對方이 되게 한 者 4. 營業으로 青少年을 青少年에게 성을 파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②第1項第1號 부터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u>청소년의性を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u> 誘引·勸誘한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7條 (幹旋營業行爲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は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개정 200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의性を 사는 행위의場所를</u> 提供하는 行위를 業으로 하는 者 2. <u>청소년의性を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u> 行위를 業으로 하는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事實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を 提供한 者 4. 營業으로 性を 사고 파는 行위의 場所를 提供하는 業所 또는 <u>알선하는 業所에</u> 青少年을 雇用한 者 <p>②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爲를 <u>알선한 者</u> 4. 營業으로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위의 場所를 提供하거나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위를 <u>알선하기로 約束한 者</u> <p>③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強要한 者は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8條 (青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配布등)</p> <p>①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は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 營利를 目的으로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u>貸與</u>·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所持·運搬하거나, <u>공연히</u> 展示 또는 上映한 者は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④ <u>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상대방이</u>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7條 (幹旋營業行爲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は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개정 200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에게 性を 파는 행위의場所를</u> 提供하는 行위를 業으로 하는 者 2. <u>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주선하는</u> 行위를 業으로 하는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事實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を 提供한 者 4. 營業으로 性を 사고 파는 行위의 場所를 提供하는 業所 또는 <u>주선하는 業所에</u> 青少年을 雇用한 者 <p>②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爲를 <u>주선한 者</u> 4. 營業으로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위의 場所를 提供하거나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위를 <u>주선하기로 約束한 者</u> <p>③ 青少年의 性を 사는 行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強要한 者は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8條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配布등)</p> <p>①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は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 營利를 目的으로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u>빌려줌</u>·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所持·運搬하거나, <u>다수가 알수 있게</u> 展示 또는 上映한 者は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p> <p>第1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當해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罰金刑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2條 (內國人的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형법』 第3條(內國人的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 犯罪情報를 신속히 入手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3章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개정 2005.12.29></p> <p>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p>	<p>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부터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p> <p>第1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사용인 그 밖에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이 업무와 關하여 6條 부터條의 罪를 범하면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 罰金刑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2條 (內國人的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第5條 부터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형법』 第3條(內國人的 國外犯)의 규정에 따라서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 犯罪情報를 신속히 入手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3章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개정 2005.12.29></p> <p>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 에게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가정</p>

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p>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p> <p>④青少年을 青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⑤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p> <p>④青少年을 青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주선한 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⑤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9條 (青少年 賣買行爲)</p> <p>①青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青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青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青少年을 國外에 賣買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青少年을 國內에 賣買 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9條 (青少年 賣買行爲)</p> <p>①青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青少年利用淫亂物을 만드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青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青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青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青少年을 國外에 사고팔거나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青少年을 國內에 賣買 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10條 (青少年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 등)</p> <p>①女子 青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개정 2005.12.29></p> <p>②青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29></p> <p>③青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p> <p>④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青少年을 姦淫하거나 青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⑤第1項 내지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10條 (青少年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 등)</p> <p>①女子 青少年에게 『형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개정 2005.12.29></p> <p>②青少年에게 『형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29></p> <p>③青少年에게 『형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p> <p>④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青少年을 姦淫하거나 青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⑤第1項 부터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p>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p> <p>제15조의2 (가해 청소년의 처리)</p> <p>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p> <p>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p>	<p>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p>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③제1항제2호에서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p> <p>제15조의2 (가해 청소년을 처리)</p> <p>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터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로 넘겨야 한다.</p> <p>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관할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p>

<p>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p>	<p>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p>
<p><u>취리한다</u>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p>	<p>취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p>
<p>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격이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로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 (보호처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p>	<p>제15조 (보호처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사건을 넘겨 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호처분</p>

현 행	개 정 안
<p>4.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 安靖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業務</p> <p>5.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 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p> <p>6.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p> <p>7.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p> <p>8. 기타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p> <p>第18條 (秘密漏泄禁止)</p> <p>①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查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은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寫眞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靑少年 性賣買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사생활에 관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 대하여는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p>	<p>4.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에게 身體的·精神的 安靖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業務</p> <p>5. 加害者에게 告訴와 被害賠償請求 등 司法處理節次와 관련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p> <p>6. 靑少年을 性暴力犯罪로부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p> <p>7. 靑少年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p> <p>8. 그 밖에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p> <p>第18條 (秘密漏泄禁止)</p> <p>①第5條 부터 第10條에서 규정된 罪의 搜查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은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이름·나이·學校 또는 職業·생김새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寫眞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이 알게해서는 아니된다.</p> <p>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靑少年 性賣買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사생활에 관한 秘密을 타인이 알게해서는 아니된다.</p> <p>③第16條 및 第17條에서 규정된 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이 알게해서는 아니된다.</p> <p>④第5條 부터 第10條까지 규정된 범죄의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이름·나이 또는 職業·생김새 그</p>

<p>는 職業·容貌 기타 像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 등</p>	<p>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 등을 新聞 등 出版物</p>
<p>제16조 (保護施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개정 2005.12.29></p> <p>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의 他機關에의 委託</p> <p>第17條 (相談施設)</p> <p>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개정 2002.12.18, 2005.12.29></p> <p>1.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 申告 접수 및 相談</p> <p>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連繫</p> <p>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關連한 調査·研究</p> <p>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개정 2005.12.29, 2005.12.29></p> <p>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p> <p>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關한 相談에 應하는 業務</p> <p>3.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業務</p>	<p>제16조 (保護施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개정 2005.12.29></p> <p>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을 다른 기관에 위탁</p> <p>第17條 (相談施設)</p> <p>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개정 2002.12.18, 2005.12.29></p> <p>1. 第5條 부터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 申告 접수 및 相談</p> <p>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을 연결</p> <p>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關連한 調査·研究</p> <p>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23條 및 第24條에 규정에 따른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개정 2005.12.29, 2005.12.29></p> <p>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p> <p>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關한 相談에 應하는 業務</p> <p>3. 性暴力被害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業務</p>

현 행	개 정 안
<p>7. <u>청소년에 대하여</u>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p> <p>8. <u>청소년에 대하여</u>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p> <p>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u>第2項의 規定에 의한</u> 身上 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 公開對象者 및 對象 青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 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青少年에 <u>대한 관계</u>, 犯行후의 情況 등을 고려하여 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 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u>第2項의 規定에 의한</u>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 青少年과 被害 青少年의 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p> <p>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u>제2항의 規定에 의한</u>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u>내지</u>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p> <p>⑥ 第1項 및 <u>第2項의 規定에 의한</u>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1조 (교육과<u>정</u>의 이수권고)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에 대한</u></p>	<p>7. <u>청소년에게</u>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p> <p>8. <u>청소년에게</u>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p> <p>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u>第2項에서 규정된</u> 身上 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 公開對象者 및 對象 青少年의 <u>나이</u>,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 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u>對象 青少年과의 관계</u>, 犯行후의 情況 등을 고려하여 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 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u>第2項에 규정된</u>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u>부터 第10條에서 규정된 범죄의</u> 對象 青少年과 被害 青少年의 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p> <p>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u>제2항에서 규정된</u>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u>부터</u>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p> <p>⑥ 第1項 및 <u>第2項의 規定에 따른</u>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1조 (교육과<u>정</u>을 이수권고)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에게</u> 재</p>

<p>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p>	<p>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p>
<p>을 新聞等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⑥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와 발행인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9條 (搜查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查를 담당하는 搜查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p> <p>第 4 章 靑少年 대상 성범죄의 예방 <개정 2005.12.29></p> <p>第20條 (犯罪防止 啓導)</p> <p>①국가靑少年위원회는 靑少年의 性を 사는 행위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 2回 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 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p> <p>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2.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第1項부터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⑥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일하는 사람과 發行人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9條 (搜查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부터 第10條에서 규정된 범죄를 搜查를 담당하는 搜查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하면서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p> <p>第 4 章 靑少年 대상 성범죄의 예방 <개정 2005.12.29></p> <p>第20條 (犯罪防止 啓導)</p> <p>①국가靑少年위원회는 靑少年의 性を 사는 행위등의 犯罪防止를 위해 啓導文을 年 2回 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 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p> <p>②第1項에서 규정에 따른 啓導文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p> <p>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2. 第6條第1項부터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p>

현 행	개 정 안
<p>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p> <p>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 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p> <p>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등록정보의 열람)</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5조 (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p>	<p>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p> <p>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 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p> <p>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같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등록정보를 열람)</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가져나가서는 아니된다.</p> <p>제25조 (등록정보를 통보 및 관리 등)</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p>

<p>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p>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u>개별 통보</u>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u>내지</u>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2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u>내지</u>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p>	<p>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p> <p>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u>규정에 따라서</u>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서</u>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p>

현 행	개 정 안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u>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u>(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p> <p>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p> <p>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u>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u></p> <p>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u>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u></p> <p>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u>규정에 의한</u> 보육시설</p> <p>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아동복지시설</p> <p>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u>당해</u>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u>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u>호 및 2호의</u> <u>규정에 따른</u>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p> <p>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u>규정한</u>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p> <p>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u>규정한</u> 청소년활동시설</p> <p>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u>규정된</u> 청소년쉼터</p> <p>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u>규정한</u> 보육시설</p> <p>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서 <u>규정한</u> 아동복지시설</p> <p>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u>해당</u>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u>와 같이</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7조 (벌칙)</p> <p>①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p>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p>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p>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부탁할수 있다.</p> <p>③등록정보를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과 같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 업무에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등록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해서는 아니된다.</p> <p>제27조 (벌칙)</p> <p>①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다른사람이 알게한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p>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p> <p>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

《 부 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p>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11호) 법무부</p> <p>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第1條 (目的) 이 법은 건전한 國民經濟倫理에 반하는 特定經濟犯罪에 대한 加重處罰과 그 犯罪行爲者에 대한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8.1.13, 2001.3.28, 2002.12.5, 2004.12.31></p> <p>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韓國銀行, 金融監督院 및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 나. 삭제 <1998.1.13> 다.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조합과 그 中央會 바.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조합과 그 中央會 사. 삭제 <2002.12.5> 아.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과 그 중앙회 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聯合會 차.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카.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p>	<p>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11호) 법무부</p> <p>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제1 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자에게 취업제한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8.1.13, 2001.3.28, 2002.12.5, 2004.12.31></p> <p>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u>그 외에 법률에 규정된 은행</u> 나. 삭제 <1998.1.13>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다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다른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삭제 <2002.12.5>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다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차. 신탁업법에 다른 신탁회사 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다른 위탁회사</p>

현 행	개 정 안
<p>다.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p> <p>파.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p> <p>하.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p> <p>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p> <p>너. <u>그 밖에 가목 내지</u> 거목의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p> <p>2. “貯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金融機關에 預入·納入 또는 信託하거나 金融機關으로부터 受領 또는 買入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預金·積金·賦金·계금 및 信託財産</p> <p>나. 株式·債券·受益證券·어음·手票 및 債務證書</p> <p>다. 保險料</p> <p>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p> <p>3. “貸出등”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취급하는 貸出,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 給付, 債券 또는 어음의 割引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第3條 (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p> <p>①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p>	<p>다. 증권거래법에 다른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p> <p>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p> <p>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p> <p>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p> <p>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의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p> <p>2. “저축”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기관에 예탁·납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또는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예금·적금·부금·계금 및 신탁재산</p> <p>나. 주식·채권·수익증권·어음·수표 및 채무증서</p> <p>다. 보험료</p> <p>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p> <p>3. “대출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급부,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 (특정재산범죄를 가중처벌)</p> <p>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p>

현 행	개 정 안
<p>②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金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p> <p>③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所屬金融機關 또는 다른 金融機關의 任·職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斡旋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金品 기타 利益의 價額(이하 “收受額”이라 한다)이 1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收受額이 5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收受額이 1千萬원 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p>第 6 條 (贈財등의 罪)</p> <p>①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品 기타 利益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第1項의 行爲에 제공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받은 者는 第1項의 刑과 같다.</p> <p>第 7 條 (斡旋收財의 罪) 金融機關의 任·職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斡旋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p>	<p>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제 6 조 (증재등의 죄)</p> <p>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p> <p>제 7 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주선하면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요</p>

<p>또는 約束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구 또는 약속한 者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利得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삭제 <1990.12.31> ②第1項의 경우 利得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p>	<p>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第4條 (財産國外逃避의 罪) ①法令에 違反하여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하여야 할 財産을 國外에서 隱匿 또는 處分하여 逃避시킨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逃避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逃避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 미만인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삭제 <1990.12.31>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未遂犯은 각 本罪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④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第1項에 規定된 罰金을 科한다.</p>	<p>제4조 (재산국의도피 죄) ①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도피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p>
<p>第5條 (收財등의 罪) ①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p>	<p>제5조 (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第10條 (沒收·追徵)</p> <p>①第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犯人이 逃避시키거나 逃避시키려고 한 財産은 이를 沒收한다.</p> <p>②第5條·第6條·第7條 및 第9條第1項·第3項의 경우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3者가 받은 金品 기타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p>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p> <p>第11條 (無認可短期金融業의 加重處罰)</p> <p>①綜合金融會社에 관한法律 第28條第1項 第1號의2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는 그 營業으로 인하여 取得한 利子·割引 및 收入料 기타 手數料의 金額(이하 “手數料額”이라 한다)이 年1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8.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手數料額이 年 10億원 이상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手數料額이 年 1億원 이상 10億원 미만인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p>②第1項의 경우에 取得한 手數料額의 100분의 10 이상 手數料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p> <p>第12條 (報告義務등)</p> <p>①金融機關의 任·職員은 그의 監督을 받는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情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所屬金融機關의 長이나 監査 또는 檢査의 職務를 담당하는 部署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金融機關의 長이나 監査 또는 檢査의 職務에 종사하는 任·職員 또는 監督機關의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 金融機關의 任·</p>	<p>제10조 (몰수·추징)</p> <p>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p> <p>②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u>그 외의 이익은</u> 이를 몰수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제11조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p> <p>①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1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할인 및 수입료 기타 수수료의 금액(이하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8.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제12조 (보고의무등)</p> <p>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금융기관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금융기관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임·직원</p>

<p>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된 罪를 범한 情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p>	<p>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規定된 罪를 범한 事정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p>
<p>第8條 (私金融機關의 罪)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자기의 利益 또는 所屬金融機關외의 第三者의 利益을 위하여 자기의 計算 또는 所屬金融機關외의 第三者의 計算으로 金錢의 貸付,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를 하거나 이를 斡旋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9條 (貯蓄關聯不當行爲의 罪)</p> <p>①貯蓄을 하는 者 또는 貯蓄을 仲介하는 者가 金融機關의 任·職員으로부터 당해 貯蓄에 관하여 法令 또는 約款 기타 이에 준하는 金融機關의 規程에 의하여 정하여진 利子·福金·保險金·配當金·報酬외에 名目여하를 불문하고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貯蓄을 하는 者가 당해 貯蓄과 관련하여 당해 貯蓄을 仲介하는 者 또는 당해 貯蓄과 관계없는 第三者에게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등을 받게 한 때 또는 貯蓄을 仲介하는 者가 당해 貯蓄과 관련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등을 받거나 당해 貯蓄과 관계없는 第三者에게 貸出등을 받게 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p> <p>③金融機關의 任·職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된 金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거나 貸出등을 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刑과 같다.</p> <p>④第1項·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を 併科할 수 있다.</p> <p>⑤金融機關의 任·職員이 所屬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所屬金融機關에 대하여도 第3項에 規定된 罰金を 科한다.</p>	<p>제8조 (사금융관련범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p> <p>①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자·복금·보험금·배당금·보수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저축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과 관련하여 해당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한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해당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해당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출등을 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형과 같다.</p> <p>④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⑤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소속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소속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제3항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懲役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5年</p> <p>2. 懲役刑의 執行猶豫의 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 2年</p> <p>3. 懲役刑의 宣告猶豫期間</p> <p>②第1項에 規定된 者 또는 그를 代表者나 任員으로 하는 企業體는 第1項各號의 期間동안 大統領令이 정하는 官許業의 許可·認可·免許·登錄·指定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第1項의 경우 國家·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한 機關 및 그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과 有罪判決된 犯罪行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企業體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가 있는 때에는 當該人이 就業하고 있는 機關이나 企業體의 長 또는 許可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의 解任이나 許可등의 取消를 要求하여야 한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要求를 받은 機關이나 企業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第1項·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p> <p>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p> <p>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p> <p>②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호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u>규정에 따라서</u>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현행	개정안
<p>③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④정당한 事由없이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⑤第3項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한 者가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p> <p>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機關 및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3條 (經濟事犯管理委員會)</p> <p>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法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經濟事犯管理委員會를 둔다.</p> <p>1. 第14條第1項 但書 및 同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에 관한 事項</p> <p>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에 관한 事項</p> <p>3.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經濟事犯管理에 관한 事項</p> <p>②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4條 (一定期間의 就業制限 및 認·許可禁止등)</p> <p>①第3條·第4條第2項(未遂犯을 포함한 다)·第5條第4項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期間동안 金融機關, 國家·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한 機關 및 그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과 有罪判決된 犯罪行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企業體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경제사범관리위원회)</p> <p>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둔다.</p> <p>1. 제1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p> <p>2.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관한 사항</p> <p>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사범관리에 관한 사항</p> <p>②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허가금지등)</p> <p>①제3조·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